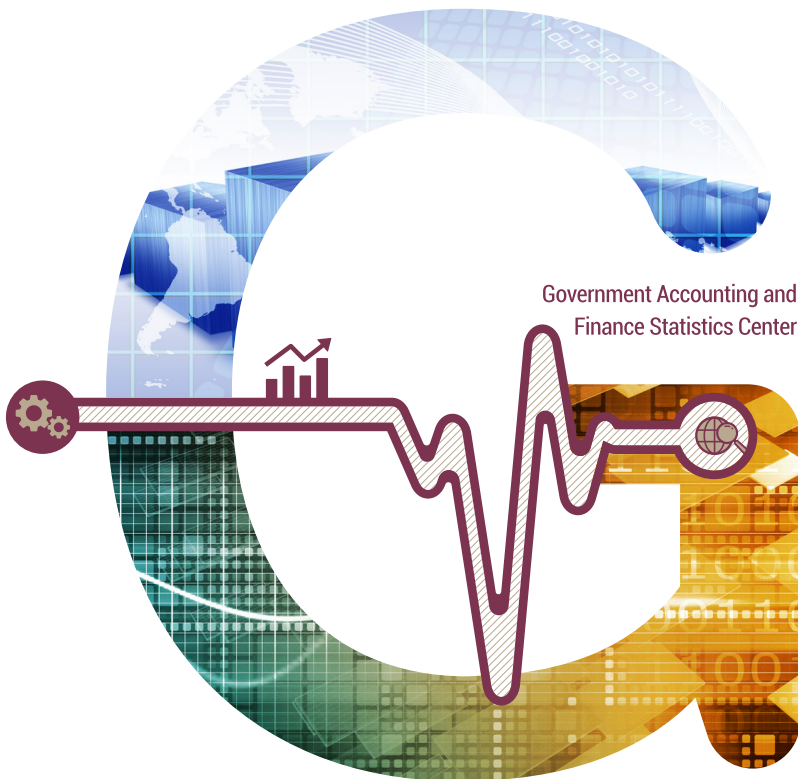


#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2년 겨울호  
Vol. 33



#### 국가회계 동향

2022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및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참석 결과보고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재정통계 동향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센터 동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부회계인상 수상

# CONTENTS

## 2022년 겨울호

Vol. 33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재정통계

## VOL. 33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년 겨울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 국가회계 동향

- 04 2022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및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참석 결과보고
- 13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해외위탁연구 수행
- 31 국가결산체계 개편방안 시범결산 수탁과제 수행
- 34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소개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48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49 2022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 51 2022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52 2022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재정통계 동향

- 54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센터 동향

- 6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부회계인상 수상
- 65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66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결과
- 69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간보고
- 70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최종보고회 개최

## 세미나

- 74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 91 2022 국세행정포럼
- 99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 공지사항

- 107 뉴스레터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 국가회계 동향



- 2022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및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참석 결과보고
-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해외위탁연구 수행
- 국가결산체계 개편방안 시범결산 수탁과제 수행
-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소개

## 01 2022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및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참석 결과보고



2022년 IPSASB 정례회의(2022. 9. 15., 포르투갈 리스본)

### 가. 출장 개요

-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측정 프로젝트' 관련 최신 동향 파악 및 각국 기준제정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 기반 마련
- 출장기간: 2022. 9. 13.~2022. 9. 22.
- 출 장 지: 포르투갈 리스본 및 카스카이스
- 출 장 자: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임정혁 특수전문직 3급

## 나. 정례회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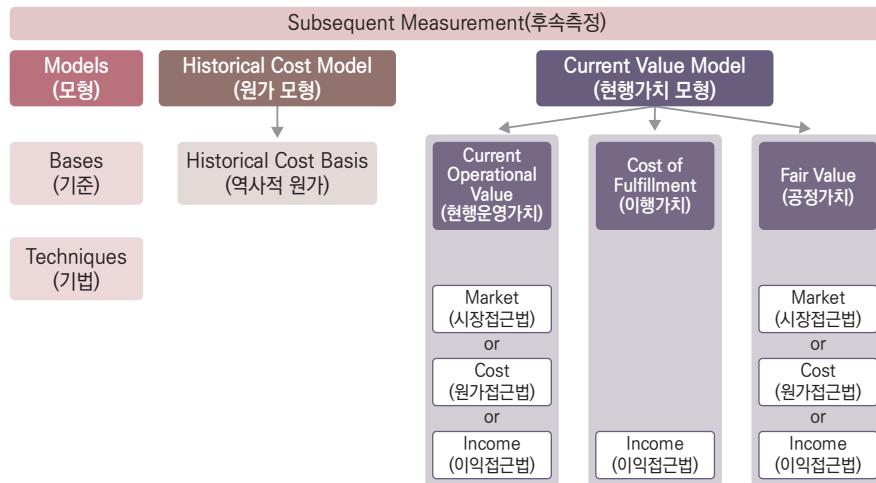
IPSASB(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는 2017년 6월부터 개별 IPSAS(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 기준서에 따른 측정 규정과 IPSASB 개념체계 사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Measurement)’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4년 10월에 발표된 IPSASB 개념체계는 공공부문의 측정기준으로 ‘시장가치(market value)’를 제시하고 있는데, IPSAS 17, 유형자산 등 다수의 현행 IPSAS 기준서들은 시장가치가 아닌 ‘공정가치(fair value)’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정의가 2011년에 발표된 IFRS 13, 공정가치 측정과 개념적으로 달라 괴리가 존재해 왔다.

IPSAS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부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측정과 관련된 개념과 원칙을 재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측정기준을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 및 부채의 후속측정과 관련된 서열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새로운 측정기준인 ‘현행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 이하 COV)’를 개발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측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IPSASB 개념체계의 부분 개정과 측정 관련 원칙적 문단이 포함된 IPSAS 기준서의 신규 제정, COV의 적용을 위한 IPSAS 17, 유형자산의 개정이 될 전망이다.

**그림 1** 자산 및 부채 후속 측정의 서열체계



출처: ED77, Measurement(IPSASB)

2022년 9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COV가 갖는 개념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IPSASB가 공정가치에서 만족하지 않고 COV라는 새로운 측정기준을 개발하게 된 것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자산의 공정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거나 구할 수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가치는 개념적으로 대상 자산을 최고 최선의 용도로 사용하고 시장참여자의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측정된 값이므로,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당해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실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유하는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자산 중 상당수가 관련 시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관련 시장이 있더라도 정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공정가치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운영가치는 공공부문이 운영역량(operational capacity)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의 현행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측정 IPSAS 기준서(안)은 이를 ‘측정일 현재 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IPSASB는 9월 정례회의에서 현행운영가치와 공정가치의 비교 결과와 현행운영가치의 적용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운영가치의 정의를 뒷받침하는 개념적 원칙(Principles)과 적용원칙(Application of Principles)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확정하였다.

**표 1** 현행운영가치와 공정가치의 원칙 요소 비교

구분	현행운영가치(COV)	공정가치(FV)
개념적 원칙 (Principles)	[현재 자산(Existing Asset)] 측정 대상 자산은 미래에 계획된 취득, 건설, 개발이 아닌 현재 이용 가능하거나 운영 중인 자산	[자산과 부채(Asset and liability)] 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정할 때 고려할 만한 자산 또는 부채의 특성(예: 자산의 상태 및 위치, 존재한다면 자산의 매각 또는 사용에 관한 제약)을 고려해야 함
	[현재 위치(Existing Location)] 현재 자산이 설치되었거나 사용 중인 곳과 동일한 위치에서 실체가 자신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계속하여 달성할 것을 전제함	
	[현재 용도(Existing Use)] 자산은 잠재적인 대체 용도와 자산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의 기타 특성과 무관하게 현재의 용도에 근거하여 측정	[최고 최선의 사용(Highest and best use)] 공정가치 측정 시 당해 자산을 최고 최선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하고 자 하는 시장참여자에게 매각하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함
	[유입가치(Entry Price)] 측정일에 실체가 현재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실체가 부담하고자 할 금액을 반영하여 측정 자산을 획득할 때 발생될 모든 거래원가는 현행운영가치 측정치에 포함됨	[유출가치(Exit Price)] 공정가치는 주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산을 매각했을 때 수취할 가격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The Least Costly Manner)] 측정일 시점에서 실체가 현재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현재 서비스 전달 목표를 계속하여 달성 가능케 하기 위해 실체가 부담하고자 할 금액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측정	[정상거래(Orderly Transaction)] 자산은 측정일에 현재 현행 시장 조건에 따라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됨
적용원칙 (Application of Principles)	[실체 특유 관점(Entity-Specific Perspective)] 실체가 자신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실체 관점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측정	[시장참여자(Market Participants)] 시장참여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자산의 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표 1** 의 계속

구분	현행운영가치(COV)	공정가치(FV)
적용원칙 (Application of Principles)	[현행 시장 조건(Current Market Conditions)] 측정방법은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비슷한) 자산에 대해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적합한 정보를 사용함	[현행 시장 조건(Current Market Conditions)] 측정방법은 동일하거나 비교 가능한(비슷한) 자산에 대해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그 밖의 목적적합한 정보를 사용함
	[시장 투입요소(Market Inputs)] 측정방법은 실제 사건이나 거래에 관해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투입변수를 사용함	[시장 투입요소(Market Inputs)] 측정방법은 실제 사건이나 거래에 관해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은 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투입변수를 사용함

출처: IPSASB Meeting Agenda Item 3(IPSASB) 바탕으로 저자 작성

현행운영가치는 현재의 자산을 지금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용도, 즉 현재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위해 계속 사용한다고 전제할 때 당해 자산의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실체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다. <표 2>의 사례에서 학교 건물의 현행운영가치는 현재 서비스 전달 목표인 ‘500명 학생 대상 교육서비스 제공’을 달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금액이 적은 것으로 측정될 것이다.

**표 2** 현행운영가치(COV)의 적용사례(안)

- 실체는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0명의 학생을 수용 가능한 학교(A초등학교)를 도심에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현재 300명(60%)의 학생이 재적 중이나 실체는 운영 규정상 500명의 수용능력을 유지해야 함
- 이때 당해 학교의 현행운영가치(COV)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자산: 측정 대상 자산은 현재 사용 중인 A초등학교임
  - 현재 용도: 학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학교 건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현재 위치: 현재 학교의 위치(도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유입가치: 500명분의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현재 학교 건물의 운영 목표를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해 실체가 부담하고자 할 금액으로 측정
  - 비용 최소화 방법: 현재 운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개인 경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함

IPSASB는 2022년 12월 회의에서 현행운영가치의 실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측정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에, 2023년 3월 회의에서 IPSASB 개념체계와 IPSAS 17의 개정 및 측정 IPSAS 기준서 제정에 대해 최종 승인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개발이 끝난 것은 아니나 현행운영가치는 주로 정부 등 공공부문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가치를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보고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기준이라는 점에서, 국가회계기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후속측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은 국가회계실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하였거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 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이를 공정가액 또는 공정가액의 대체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시가표준액과 같은 공정가액 대응치로 재평가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그 보유 목적이 매각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창출이 아님에도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가치가 재정상태표에 공정가액으로 부적절하게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IPSASB에서 개발 중인 현행운영가치는 운영 역량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전달 능력의 변화 정도를 후속적으로 반영해 주는 측정기준임을 고려할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정가액 또는 그 대응치에 비해 더 목적적합한 자산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향후에도 현행운영가치에 관한 IPSASB의 논의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계획이다.

## 다.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주요 내용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는 포르투갈 공인회계사회(Ordem dos Contabilistas Certificados)와 함께 제4차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Public Sector Standard Setters Forum)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은 각국의 공공부문 회계기준 제정 당사자가 모여 공공부문의 재무보고와 회계기준, IPSASB의 미래 전략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어 온 포럼이다. IPSASB는 이 포럼을 공공부문 회계기준 당사자들이 각국의 현안과 도전과제를 능동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네트워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2년 공공부문기준제정자 포럼(2022. 9. 19~20.,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이번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의 가장 큰 화두는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public sector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ance)이었다. IPSASB는 지난 5월 발표한 자문보고서(CP,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Advancing Public Sector Sustainability Reporting)’을 통해 공공부문만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 필요한지 여부와 개발을 위한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또 IPSASB가 이 지침을 효과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나 여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IPSASB는 자문보고서에서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개발할 필요성<sup>1)</sup>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고 수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국제기구에는 아직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IPSASB의 25년에 걸친 고품질 재무보고기준 개발 경험과 강점<sup>2)</sup>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IPSASB가 즉시 지침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자문보고서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GSSB)의 GRI 기준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1 및 IFRS S2와 같은 다른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지침을 적극 활용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IPSASB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GSSB의 기준 책임자인 Bastian Buck씨와 IFRS 재단 이사인 Lee White씨를 초대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GRI와 IFRS의 관점과 개발 현황, 주안점에 대해 소개하는 교육 세션을 진행하였다.

포럼에서 IPSASB는 당해 자문보고서에 대해 총 70개의 서면의견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2022년 7월과 8월에 개최된 지역별 라운드테이블에서 총 127개국의 492명 참석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면서,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공공부문에게도 지속가능성 보고가 필요하고(99% 찬성), IPSASB가 공공부문의 지

---

1) 자문보고서에서 IPSASB가 제시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개발 유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과 같이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련된 광범위한 역할을 직접 담당하며, 정책수단을 통해 관련 사업의 촉진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둘째,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GDP의 평균 40% 이상이 일반정부의 지출에 해당할 만큼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지출의 용처와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투명성 및 회계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World Bank의 2022년 1월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조 달러 규모의 국제 채권시장에서 국채의 비중이 거의 40%에 달할 정도로 공공부문의 자본조달 활동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파리협정은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에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자문보고서에서 IPSASB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개발과 관련된 자신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IPSASB의 '공공부문의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4)'는 이미 비재무정보의 보고 개념까지 다루고 있으며, RPG 1, 실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를 비롯한 세 가지의 권장실무 지침(RPGs)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둘째, 이미 IPSASB는 '지속가능성 사업 정보의 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할당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프로젝트를 통해 재무제표를 포함한 재무보고서상 하충토 자원, 물, 생물자원 등의 보고 이슈를 다룬 자문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셋째, IPSASB는 국제적 보고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정립하고 준수한 오랜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준제정자, 국제기구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이끌어야 하며(97%),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98%)는 의견을 피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IPSASB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와 유사하게 100명 이상의 포럼 참가자가 전원 참여한 현장 분임토의에서도 IPSASB의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었음을 밝혔다. 현장 분임토의 참가자들은 IPSASB가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제정자로서의 적격성을 갖고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기후변화 이슈이며, 공공부문의 보고 수요를 고려하면서도 GRI나 ISSB와 같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와 최대한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PSASB는 이번 포럼에서 얻은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권고사항을 종합하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릴 2022년 12월 IPSASB 정례회의에서 IPSASB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2023년부터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 의결할 계획이다.



2022년 공공부문기준제정자 포럼(2022. 9. 19~20.,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 02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해외위탁연구 수행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1년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우발부채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해외위탁연구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제1장 영국의 우발부채 개요, 제2장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 제3장 우발부채 관리 시스템 효과분석, 제4장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5장 시사점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하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전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Center/list.do](https://www.kipf.re.kr/gafsc/Publication/publication_Report/kiPublish/CA/Center/list.do)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전례 없는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IMF와 영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우발부채의 현실화를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였다. 이에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9~10년 처음으로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를 발행하여 공공부문의 우발부채 정보를 제공했고, 2017년에는 우발부채 승인체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 우발부채의 조사, 통제 및 감독을 강화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을 신설하여 우발부채를 발생시키는 정책 평가 및 대안점 모색, 기존 우발부채 평가 및 관리, 기존 부채 식별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하여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우발부채 유형 및 위험 이해 및 신용 위험 관리 전문성 증진 등의 우발부채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1. 영국의 우발부채 현황

### 가. 우발부채의 정의

우발부채는 현재 부채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여 의무사건이 발생하면 부채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로,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된다. 반면에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remote contingent liabilities)는 필수적인 주석 공시사항은 아니다. 영국의 각 공공기관은 우발부채 정의를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작성된 재무제표는 이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WGA)에 통합된다.

**표 1** 국제회계기준(IAS 37)에 따른 총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

<b>총당부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li> <li>- 요건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li> <li style="padding-left: 20px;">2) 의무 이행을 위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음</li> <li style="padding-left: 20px;">3)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li> </ul>
<b>우발부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당부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인식</li> <li>- 발생 가능성에 따라 높은(probable), 낮은(possible), 희박한(remote) 우발부채로 분류 가능</li> </ul>

출처: 국제회계기준(IAS 37)

### 나. 공공자금관리(Managing Public Money) 시스템상의 우발부채

1977년 11월, 영국 재무부는 신규 보증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통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 도입의 일환으로, 우발부채를 의회에 공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이후 공공자금관리로 통합되었다. 각 부처는 희박한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각 부처의 회계담당자는 공공자금관리를 통해 계량화하거나 계량화하지 못하는 희박한 우발부채를 평가한다. 공공자금관리의 상세 요구사항은 <표 2>와 같다.

**표 2** 공공자금관리(MPM)의 상세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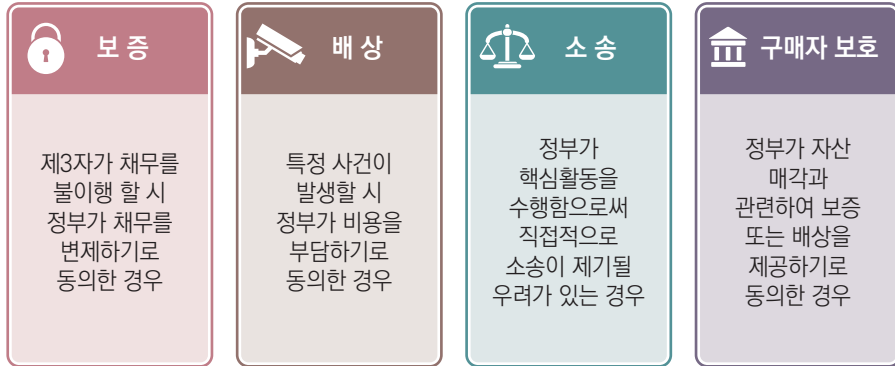
<b>요구 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확실한 부채(uncertain liabilities) 정보는 의회에 통지해야 하며, 장관성명서와 하원(House of Commons)에 제출하는 부처 회의록에 기재해야 함</li> <li>- 우발부채가 여러 부처에 영향을 미치나 부처별로 명확하게 분배되지 않을 시, 관련 부처의 장관이 이를 의회에 통지해야 함</li> <li>- 예외적으로 신규 부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할 때, 장관은 관련 위원회와 공공회계위원회(PAC)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해제될 경우 의회에 공개적으로 통지함</li> <li>- 중앙정부의 공공기관(Arms' length bodies)이 예산 내에서 변제할 수 없는 우발부채를 추정할 시, 장관은 이를 의회에 통지해야 함</li> </ul>
--------------	--

출처: 영국 재무부(HM Treasury), '공공자금관리(MPM)'

## 다. 우발부채의 종류

「우발부채 승인체계 가이드라인」<sup>1)</sup>에 따르면, 우발부채는 보증, 배상, 소송 및 구매자 보호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그림 1 우발부채 승인체계상 우발부채 구분



출처: 영국 재무부, 「우발부채 승인체계 가이드라인」

## 라.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상 약정사항, 우발부채, 총당부채

영국의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sup>2)</sup>는 중앙정부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국민건강서비스기관, 학교, 공기업 등 1만개 이상 공공기관의 재무정보를 포괄하는 결산 보고서로, 감사를 받은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 정보를 보고한다. 이에선 잠재적인 미래 부채 등의 정보도 포함되며, 각 부처는 계량화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우발부채의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주석 공시 대상인 발생가능성이 높은 우발부채뿐 아니라 희박한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역시 주석으로 보고된다.<sup>3)</sup> 2022년 7월에 발간된 2019~20년 WGA를 살펴보면, 약정사항은 2015~16년에 비해 약 32% 증가하였으며, 우발부채는 약 19% 감소하였고, 이 중 조세불복심사는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임상 과실은 대폭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영국 정부(재무부), 「우발부채 승인체계 가이드라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ntingent-liability-approval-framework>, 검색일자: 2022. 12. 19.  
 2) 영국 정부(재무부), 『2019~20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19-20>, 검색일자: 2022. 12. 19.  
 3) Note 29. Contingent liabilities disclosed under IAS 37, Note 30. Remote contingent liabilities reported to Parliament

### 1) 약정사항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따르면, 약정사항이란 계약상 의무가 있으나 부채를 발생시키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중앙정부 회계실체는 공공자금관리를 통해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약정사항은 회계상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재정상태표에 인식되지 않으나 공공부문통합결산서에 포함되며,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활용된다. 공공부문통합결산서(2019~20)에 따르면, 민간투자개발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sup>4)</sup> 약정사항은 소폭 감소했고, 기타 금융약정은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표 3 공공부문통합결산서(2019~20)의 약정사항과 우발부채**

(단위: 십억 파운드)

구분	2019~20	2018~19	2017~18	2016~17	2015~16
<b>약정사항 (Commitments)</b>	196.8	183.7	168.7	159.4	148.3
<b>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b>	84.6	80.1	83.7	84.0	104.3

출처: 영국 정부(재무부), 『2019~20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표 4 공공부문통합결산서(2019~20) 약정사항(상세)**

(단위: 십억 파운드)

자본약정 <sup>1)</sup> (capital commitments)	PFI 금융리스	운영리스	금융리스	기타	합계
57.7	37.1	23	8.1	70.9	196.8

주: 1) (2019~20) 자본적 약정사항(577억 파운드)은 국방부(238), 교통부(57), 스코틀랜드 정부(45) 등으로 구성  
출처: 영국 정부(재무부), 『2019~20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4) 민간투자개발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은 민관협력의 형태로 도로, 병원 및 학교와 같은 공공부문 사회기반시설과 자본 설비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제공하는 방법임(영국 의회, <https://committees.parliament.uk/work/921/managing-the-expiry-of-pfi-contracts/>, 검색일자: 2022. 12. 19.)

## 2) 우발부채

회계기준과 공시요건에 따라 공공부문통합결산서 작성대상인 공공부문 회계실체는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며, 계량화된 우발부채와 비계량화 우발부채를 공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계량화된 우발부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내용은 <표 5>와 같다. 계량화된 우발부채는 대부분 임상 과실 청구와 소송으로 구성되며, 이는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표 5** 공공부문통합결산서(2019~20)의 계량화된 우발부채

(단위: 십억 파운드)

계량화된 우발부채	2019~20	2018~19
수출보증 및 보험증권	16.6	15.7
임상 과실	49.7	50.8
조세불복심사	2.2	2.3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2.1	3.5
EU 관련 계량화된 우발부채	1.0	-
연금 보호 기금	3.7	1.0
노동연금부	2.3	0.1
기타	7.0	6.7
<b>총 계량화된 우발부채</b>	<b>84.6</b>	<b>80.1</b>

출처: 영국 정부(재무부), 『2019~20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2015~16에서 2019~20년 동안 계량화된 우발부채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조세불복심사의 경우 491억 파운드에서 22억 파운드로 대폭 감소했으며, 임상과실의 경우 2015~16년에는 계량화된 우발부채의 25%(267억 파운드)를 차지했으나, 5년 뒤에는 50%(497억 파운드)로 대폭 증가했다.

국제회계기준(IAS 37 혹은 IPSAS 19)에 따르면, 희박한 우발부채는 공시 대상은 아니나, 영국의 공공부문통합결산서는 의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2015~16년부터 2018~19년까지 전체 우발부채는 감소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2019~20년에는 증가했으며, 희박한 우발부채는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보다 4배가량 규모가 크다.

연금보호기금에서 대규모의 희박한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500억 파운드에 달한다. 계량화된 희박한 우발부채는 2019~20년에 상당히 증가했으며, 만기로 인해 배상만 소폭 감소했다.

**표 6** 공공부문통합결산서(2019~20)의 의회에 보고되는 희박한 우발부채

(단위: 십억 파운드)

구 분	기초 (2019.4.1. 재작성)	증가 (감소)	부채 확정 (Liabilities crystallised)	의무 해제 (Obligations expired)	기말 (2020. 3. 31.)
연금보호기금 -희박한 우발부채	180.0	76.8	-3.4	-3.4	250.0
보증(EIB 제외)	38.3	3.9	-0.9	-0.7	40.6
배상	33.0	0.1	0.0	-0.6	32.5
지급확약서	23.8	1.0	0.0	0.0	24.8
EIB <sup>1)</sup> 보증	31.6	0.0	0.0	0.0	31.6

주: 1) European Investment Bank(유럽투자은행)

출처: 영국 정부(재무부), 『2019~20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 3)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2018~19년에 비해 20.4% 증가하여 2019~20년 전체 부채 4조 9,727억 파운드 중, 3,748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총당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상과실과 원자력 해체 총당부채이다.

2019~20년에 원자력 해체 총당부채에는 우발부채가 없으나, 임상과실에는 861억 파운드의 총당부채와 497억 파운드의 우발부채가 있고, 자원유출이 희박하지 않은 총당부채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기초계정에 대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2020~21년과 2021~22년 공공부문통합결산서에서 보증과 배상의 영향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 2.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

### 가. 현황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야기했다. 전 세계 정부는 유례 없는 수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와 같은 공공 부문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영국 재무부의 재정위험그룹(Fiscal Risk Group)에서 재정위험관리를 총괄하나, 정부의 경제·재정 데이터 신뢰성 향상과 외부 검증을 위해 헌장(Charter)에 따라 2016년 그 기능이 예산책임청(OBR)으로 이전되었다. 예산책임청은 2017년에 처음으로 재정위험보고서(Fiscal Risks Report)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격년마다 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으로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공공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통합결산서(2009~10)를 처음으로 발행하였다.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는 비재무적 자산과 공공부문 연금부채, 충당부채 및 PFI 계약 등의 순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부문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보다 더 포괄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의 회계연도와 발행일자 간에는 최소 12개월의 차이가 있어, 적시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공공부문통합결산서를 분석한 2016~17년의 감사원(NAO) 보고서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2009~10년과 2014~15년 사이에 2/3정도 증가했고, 이는 대부분 장기에 걸친 에너지 정책 시행과 관련되었다. 보증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의 활용 또한 증가하여 정부는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다.

## 나. 우발부채 승인체계

2017년에 영국 재무부는 정부기관(수출금융청)의 모범사례 및 자문 등을 토대로 우발부채 승인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우발부채 승인체계는 공공부문 우발부채의 조사,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재정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관리 절차이다.

초기 단계인 정책 개발 시 우발부채 위험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승인 기능을 도입하였다. 부처의 위험 관리자는 위험, 경감 및 재정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는 중앙정부 전반에 걸친 우발부채가 재정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동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1년간 40개의 신규 우발부채가 검토되었고, 이 중 예상손실 추정치를 신뢰할 수 없는 비율이 50% 이상에 달했다.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 개발, 재무부 승인, 의회 통지 및 승인 및 보고 등의 4단계의 절차를 도입했고, 이를 준수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축했다.

### 1단계 정책 개발

정책수립가와 재정팀은 정책 개발로 인한 우발부채의 증가 여부를 고려하고, 이를 분류해야 한다. 정책수립가가 재무부에 가이드라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회계보고 책임은 각 부처의 회계담당자에게 있다.

### 2단계 정책 승인

두 번째 단계는 재무부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다. 만일 정책 제안이 최대 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우발부채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우발부채가 금액과 관계없이 신규 부채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혹은 파급력이 있다면, 정책담당자는 우발부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 신규(부처에 신규 부채 발생)
- 논쟁적임(우발부채가 의회나 더 폭넓은 방식의 논쟁 혹은 비판을 일으킬 가능성)
- 파급력(우발부채가 공공부문의 어느 부분에 결과를 야기)

재무부는 해당 정책과 우발부채 승인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에 조언을 구한다. 비록 승인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해당 부처 장관과 회계담당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처는 잠재적 부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3단계 의회 통지

공공자금관리에 따라 정부는 회계 보고 책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회에 우발부채를 통지해야 하며, 우발부채에는 자원유출이 희박한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2022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129개의 우발부채가 공시되었다.

### 4단계 보고

우발부채는 각 부문별 결산서에 작성되어 보고되며, 이는 추후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통합된다.

보증을 설계할 때에도 승인체계를 활용하여 만기의 제한, 총 노출액의 제한, 부분 보증 또는 공제액, 위험부담, 신용도 및 담보 등의 고려사항을 식별한다. 배상 설계 시에도 이를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 및 과실, 위험부담, 한도, 만기, 범위, 위험분산 및 도덕적 해이 감소, 위험 보조 및 소송권 등의 고려사항을 식별한다.



## 다.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

우발부채 중앙관리단(이하, 'CLCC')은 2021년 4월, 우발부채 분석과 위험관리 자문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자문기구이므로 특정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지 않는다. CLCC는 영국투자청(UK Government Investments) 내에 설립되어 재무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했다. 핵심부서는 보험 및 배상, 보증, 데이터 분석 등 3개 그룹의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CLCC는 주로 우발부채 중 배상과 재정 보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① 우발부채를 발생시키는 정책 평가,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점 모색, ② 기존 우발부채 평가 및 관리, ③ 기존 부채 식별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세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CLCC가 상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우발부채 분석을 위한 방법론과 데이터의 원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CLCC의 초기 관리 대상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되어,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통합된 공공부문의 다수 기관<sup>5)</sup>들이 제외되었다. 전체 23개 장관급 부처 중 15개 부처만이 관리 대상에 속하며, 우발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데이터 원천

우발부채 분석을 위한 데이터에는 ① 각 부처별 내부 우발부채 관리대장, ②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 ③ 부처별 연차 결산서 및 ④ 장관 성명서 등이 포함된다.

먼저 부처별 내부 우발부채 관리대장에는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 현재 상태 및 마지막 보고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이 기재된다.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는 1만개 이상의 공공기관 데이터가 포함된 포괄적인 재무제표로, 2009~10년 이래 매년 발행되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추세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만 계량화하지 못하는 부채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전체 위험 노출을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5) 스코틀랜드 정부, 지방 정부기관 및 비장관급 정부기관 등

부처별 연차 결산서는 국제회계기준(IAS 37)에 명시된 대로, 계량화 가능한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계량화되지 못하는 우발부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량화 가능한 위험 노출만 고려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 ● 우발부채 보고 관련 제한 사항

2022년 6월, 영국투자청에서 발간한 CLCC의 첫 번째 연례보고서<sup>6)</sup>에 따르면, CLCC의 체계적인 우발부채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방식에도 불구하고 우발부채를 보고할 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며, 이는 총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문제, 위험 이해 및 비계량적 우발부채 등의 세 가지 범주로 설명된다.

우선 총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총당부채인지 우발부채인지 여부는 CLCC의 핵심 쟁점이 아니며, 우발부채를 발생시키는 정책을 평가하고, 위험 노출을 계량화하고, 가능하면 변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위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는 위험관리 왜곡으로 이어지고, 위험 완화를 위해 자원 활용이 전용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한다. 회계기준 마련 시 위험노출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었으나, 기업이 직면한 위험 노출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위험 노출은 경영진의 판단과 재무제표 작성 시점의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활용하여 결정되며,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거나 상황이 변할 시 위험 노출도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관의 위험 수용 한도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비계량적 우발부채를 제외한다면, 위험 노출액이 과소평가되어 위험평가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6) 영국투자청, *The Contingent Liability Central capability: Exploring the UK government's contingent liabilities*, <https://www.ukgi.org.uk/2022/06/23/the-contingent-liability-central-capability-exploring-the-uk-governments-contingent-liabilities/>, 검색일자: 2022. 12. 19.

### 3. 우발부채 관리 시스템 효과 분석

#### 가. 우발부채 승인체계의 효과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초기 2년 동안 우발부채 조사대상은 92개였다. 이 중 85개는 승인되었지만, 나머지 7개는 승인받지 못했다. 2020년 11월까지 약 2,600억 파운드에 달하는 180개의 신규 우발부채가 제안되었으나, 총 150억 파운드에 달하는 우발부채는 완전히 거절되었다. 대부분의 승인받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포괄적인 정보 포함 및 계량 정보 측정 개선
- 위험을 줄이거나 감수한 납세자에게 배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개선

#### 나. CLCC의 효과

CLCC의 연례보고서를 살펴보면, CLCC가 파악한 영국 정부의 우발부채 금액, 중대한 위험 발생 범주 및 위험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2021년 기준, 계량화된 우발부채의 최대 노출액을 GDP 대비 9%인 2,140억 파운드로 파악하였고, 이중 희박한 우발부채는 전체의 63%(1,350억 파운드)에 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LCC는 우발부채를 경제 부문, 보증 등 우발부채 유형, 채무불이행 등 현실화 요소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는데, 주로 사회간접자본 및 국제금융 등의 경제부문에서 중대한 위험 노출이 발생함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발부채 승인체계를 활용하여 위험 청구가 가능한 83개의 사례를 식별하였다. CLCC의 성과는 이렇듯 우발부채 현황, 위험 노출, 시범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 우발부채 현황

CLCC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계량화된 우발부채의 최대 노출액은 GDP 대비 9%인 2,140억 파운드에 달한다. 이 중 희박한 우발부채는 1,350억 파운드를 차지하고, 이를 제외한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는 790억 파운드에 달한다. 우발부채의 60%는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는다.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부는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 중 최다 규모를 보유하며, 수출금융청이 그 뒤를 잇는다. 희박한 우발부채 금액을 포함하면 재무부가 가장 큰 규모의 우발부채 금액을 보유한다.

영국의 전체 15개 부처는 326개의 우발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계량화된 우발부채는 137개이며,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는 189개이다. 계량화된 우발부채의 가장 큰 규모는 국방부에서 차지하고 있으나, 계량화할 수 없는 우발부채의 수를 합하면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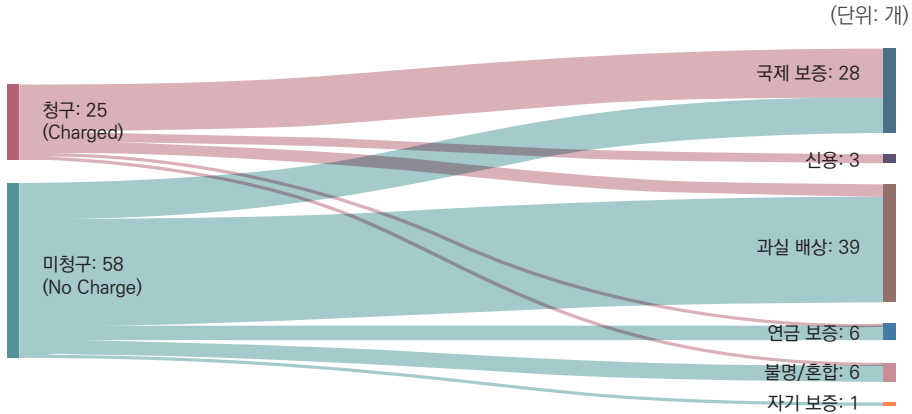
## ● 위험 노출

CLCC는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부채를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했다.

- 경제 부문(예: 에너지, 주택, 사회간접자본, 국제금융)
- 우발부채 유형(예: 보증, 배상, 구매자 보호)
- 우발부채를 현실화시키는 요소(예: 채무불이행, 제3자 배정, 법적청구)

이는 우발부채를 분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인데, CLCC는 이와 같은 분류를 활용하여 중대한 위험 노출이 사회간접자본과 국제금융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발부채 승인체계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금융데이터, 신용도 및 기타 위험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위험 청구가 가능했을 83개 사례를 식별했고, 이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우발부채 분석(CLCC)



출처: 영국투자청 우발부채 중앙관리단, 「영국 정부의 우발부채 탐색」

### 시범 분석

CLCC는 시범 분석으로, 우발부채 식별 및 관리에 있어 성숙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교통부(DfT)의 우발부채를 검토했으며, 또한 정부 전반의 기존 우발부채 누적분을 평가했다.

CLCC는 56개 우발부채에 대해 계량화, 예상 비용 산출, 프리미엄 부담 능력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이 중 35개는 특정한 우발부채 제안과 관련되며, 그중 21개는 초기 정책 개발 단계 혹은 최신의 정책 이슈와 관련되었다. 35개의 우발부채 제안 중 65% 이상은 1억 파운드를 초과했다.

### 모범사례 홍보

우발부채 자문 네트워크가 설립되었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된다. 해당 네트워크는 정책, 상업 및 재정 전문가를 모으고,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다. 정부부처의 손실과 보증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정부기관이 재정 보증과 배상의 예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특정한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활용된다. 정부기관은 우발부채 승인체계 체크리스트 중 다음의 세 가지 질의를 활용하여 손실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 1) 현금화 가능성은 얼마인가? 일정 기간 동안의 위험을 계량화할 수 있는가?
- 2) 우발부채가 현금화될 경우 추정가는 얼마인가? 추정 손실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가? 우발부채의 추정 손실 분포는 수명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가?
- 3) 우발부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실은 얼마인가?

배상의 경우, 예상 비용 추정 시 조기 위험 평가, 최악의 시나리오, 역사적 선례, 상업적 보험 약관 및 전문가 상담 등을 고려한다. 위험 노출 금액을 계량화하기보다는 범위를 할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장기적인 역사 관련 사례의 경우 1억 파운드, 재해 시나리오의 경우는 10억 파운드 등으로 1억 파운드에서 10억 파운드 등으로 위험 노출의 최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라. 정부조달 과정의 우발부채 관련 가이드라인

정부조달 시, 우발부채를 측정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 위험관리절차(위험관리절차를 통해 정부가 위험에 빠지는 과정)
- 금전적 가치(위험 노출액을 선정할 시 고려사항)
- 부채(부채 할당 시 상이한 옵션)

정부조달이 인프라, 국방 배상, 보증 등과 같은 비표준 계약 약관이나 중대하고 복잡한 위험과 관련될 때, 본 가이드라인이 주로 고려된다.

## 4.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부 보증을 중심으로)

### 가. 정부제공 보증의 종류

보증을 활용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다.

-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금융부문, 사업체 등 지원
- 수출금융청: 수출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
- 외무영연방개발청: 국제금융기관(세계은행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또는 우크라이나 지원
- 주택개발부(MLUHC): 보증을 활용하여 주택 부문 지원

그중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영국기업은행을 통해 코로나19 동안 사업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당한 지원(보증)을 제공했다.

- 회복대출제도: 중소기업에 2천 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 사이의 대출을 발행하여 지원함
- 코로나 사업중단 대출제도: 매출 4,500만 파운드 미만인 소기업에 최대 500만 파운드의 자금 제공
- 코로나 대기업 사업중단 대출제도: 매출액 4,500만 파운드 이상의 대기업에 최대 2억 파운드 제공

상기 세 가지 제도를 통해 160만개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총 170만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했고, 이와 같은 보증으로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재정 보증이 1년 사이에 85억 파운드에서 890억 파운드로 10배 증가했다.

예산책임청(OBR)은 2021년 재정위험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재정구제 패키지로 인한 위험 노출을 강조했다. 동 패키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지원금의 10배인 GDP 대비 16.2%에 달했고, 동 제도의 총 노출액은 다음과 같이 690억 파운드로 추정되었다.

- 회복대출제도(465억 파운드), 코로나 사업중단 대출제도(186억 파운드), 코로나 대기업 사업중단 대출제도(42억 파운드)

## 나. 영국 수출금융청 보증

영국 수출금융청은 1919년에 설립된 수출보증기관으로, 2019~20년 WGA에 따르면, 전체 우발부채 중 임상과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보증이 그 뒤를 잇는다. 수출금융청은 여러 측면에서 금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소한의 리스크를 B-(50%)로 설정했으며, '하한가'를 적용한다.

또한 개별수준보다는 포트폴리오 전반의 폭넓은 수준에서 위험을 평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트폴리오의 예상 손실이 50억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2억 파운드를 초과하는 위험 노출에 있어서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지난 5년간 수출금융청은 334억 파운드의 보증을 지원했다. 2021~22년에는 74억 파운드를 지원했으며, 545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 중 중소기업은 81%를 차지했다. 2021~22년 총 부가가치는 43억 파운드이며, 직접지원은 23억 파운드이고, 간접지원은 나머지 20억 파운드를 차지했다.

## 다. 외무영연방개발청의 해외 단체 지원

외무영연방개발청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을 제공했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계량화된 희박한 우발부채의 총 가치는 전년도의 30.3억 파운드에서 현실화 금액을 제하고 24.8억 파운드로 감소했다. 추가로 150억 파운드의 희박한 우발부채가 존재하며, 대다수는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중 회수 가능한 자본과 관련된다.

## 라. 주택 부문 보증

신축 주택과 주택 추가 공급 지원을 위해 30억 파운드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주택개발부(MLUHC, Leve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의 보증 혜택을 통해 자본 시장 채권 프로그램에서 조달되고 있다. 1년을 기준으로 3.2억 파운드의 대출과 2.85억 파운드의 인출이 승인되었다. 재정상태표상의 재정보증은 210만 파운드를 기록했으며, 희박한 우발부채의 경우 재정보증금은 7,830만 파운드에 달한다.

## 마. CLCC의 다음 단계

부처별 우발부채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우발부채의 잔액 및 흐름을 추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외 일부 지방정부기관 및 전 공공부문으로의 보고 실제 범위 확장을 통해 우발부채의 총 금액 및 특성을 파악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5. 시사점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사례는 정부 보증 및 배상을 중점으로 위험 평가 개선을 위한 10가지 교훈과 4가지 성공 요소를 제공한다. 먼저 10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재정 지속가능성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우발부채 유형에 대한 이해
2. 양질의 데이터
3. 신용위험 관리 부문의 적절한 전문성 활용
4. 정책개발에 대한 위험과 내재적 위험에 대한 더 나은 이해
5. 재무제표 작성 시 고려하는 다양한 정보를 우발부채 파악에 활용
6. 예산 담당자 및 고위급 인사의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책임성 이해
7. 예산담당자를 위한 명확한 지침서 개발
8. 우발부채의 흐름을 추적하여 위험의 현실화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9. 약정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10. 여러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 단체 구축

영국 수출금융청의 4가지 성공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적절한 기술을 갖춘 우수한 인재 유치
2. 명확한 비전과 목적
3.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에 투자
4. 수출신용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 03 국가결산체계 개편방안 시범결산 수탁과제 수행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2년 8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개편안을 반영하여 공시과목을 확정하고, 국가통합결산보고서 및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표준양식을 마련하기 위한 수탁과제를 진행하였다. 센터는 수탁과제를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삼일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결산보고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개편효과와 정합성을 점검하였다.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재무제표 간소화 및 핵심정보 제공

현행 재정상태표는 8페이지 분량으로 장·단기 구분 및 차감 계정 등이 모두 포함된 102개 계정과목이 공시되고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편안에서는 34개의 핵심적인 공시과목을 선정하여 1페이지 분량으로 개편하여 한눈에 재정상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단기 구분 표시 및 차감계정 등 부수적인 계정과목은 본문이 아닌 주석에서 제공하였다. 현행 재정운영표의 경우 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60여 개의 부처별 재정운영순원가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보이용자가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편안에서는 15대 분야별 원가를 공시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여 예산안 정보와 비교하여 한눈에 재정운영 규모 및 소요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필수보충정보로 공시되던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간소화(계정과목 수 120→32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주재무제표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비교환수익, 교환수익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 등으로 개편되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모두 계정과목을 비슷한 성질별로 묶어 주는 중간단계 구분을 신설하여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재정상태표: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차입부채, 총당부채
- 재정운영표: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

기존 원 단위로 제공되던 단위기준을 조원 및 억원 단위로 수정하여 재무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 총자산 2,866,057,555,340,684원 → 2,866조원)

## 나. 현금흐름표 신설

현행 세입·세출 결산은 재원의 조달원천과 현금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세목별·회계실체별 기준 대량의 데이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집행통제 목적의 결산서로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개편안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신설하여 재정활동별 재원의 조달과 현금 지출내역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금흐름표의 재정활동은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dBrain 시스템상 산출이 가능하도록 필요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 다. 주식 체계 개편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인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주식으로 통합·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8종의 주식, 12종의 부속명세서 및 7종의 필수보충정보를 22종 59개 항목으로 구성한 주식으로 통합하였으며, 작성 범위 또한 확대하였다. 재무제표 간소화에 따라 축소된 계정과목별 주석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작성되지 않은 재정상태표 일부 계정과목 및 재정운영표의 대부분 계정과목에 대한 세부 정보도 주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계별 재무정보, 연금사업, 사회보장성기금, 내부거래 정보 등 기존 제공되지 않았던 주요 재무정보를 주식으로 추가하여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 라. 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재무제표 개선 등을 통해 변경, 신설된 계정과목 등이 dBrain 시스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정과목 CoA(Chart of Account), 재무계정과목 체계개편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따라 자동분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기초자료인 예산재무과목 연계표도 함께 작성하였다. 또한 주식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에 관리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분석하여, 향후 dBrain 시스템 개발 시 고려하여야 하는 정보관리항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향후 수탁과제를 토대로 마련된 국가결산체계 개편안은 제3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센터는 확정된 개편안에 따라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과 국가회계예규 등의 개정 소요를 파악하고, 제·개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04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소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영국의 결산보고서인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sup>1)</sup> 이하 'WGA」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영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2022년 6월에 발표하였다.

WGA는 재정 투명성과 정부 재무보고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영국 고유의 보고서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교 및 공기업 등 1만개 이상의 공공부문을 모두 포함하여 발생주의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된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을 수치화하여 담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센터는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 결산보고서<sup>2)</sup>에 대한 분석이 발생주의 회계와 관련된 여러 연구의 토대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2020. 6. 6)"으로, 원문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19-20>, 검색일자: 2020. 12.)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4개국 결산보고서」,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년 봄호(Vol. 30), 2022.

## 가. 결산서의 구성

WGA는 성과보고서(결산 요약 및 결산 개요 포함), 회계책임보고서(Statement of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ies), 거버넌스 확인서(Governance Statement), 재무제표 및 주석, 감사원장 메시지, 부록인 국민계정과의 비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국가별 결산보고서 구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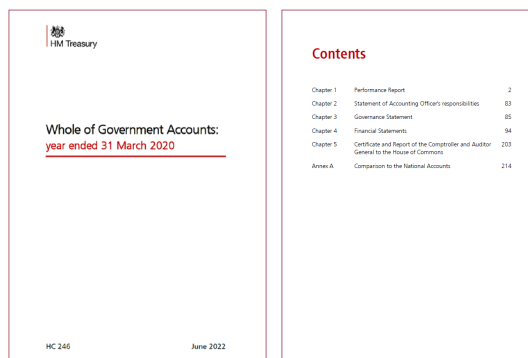
**표 1** 국가별 결산보고서 구성

구성	구분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① 책임서한	재무부 장관 메시지	×	○	○	○	×
	회계책임보고서	○	×	×	○	○
② 감사보고서(감사원장)		○	○	○	○	○
③ 요약정보	결산요약	○	○	○	○	○
	결산개요	○	○	×	○	○
④ 재무제표		5종	7종	4종	7종	5종
⑤ 주석		36개	29개	49개	30개	21개
총 분량		221p	256p	183p	177p	392p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영국의 재무제표는 총 5종으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재정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6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 WGA 표지와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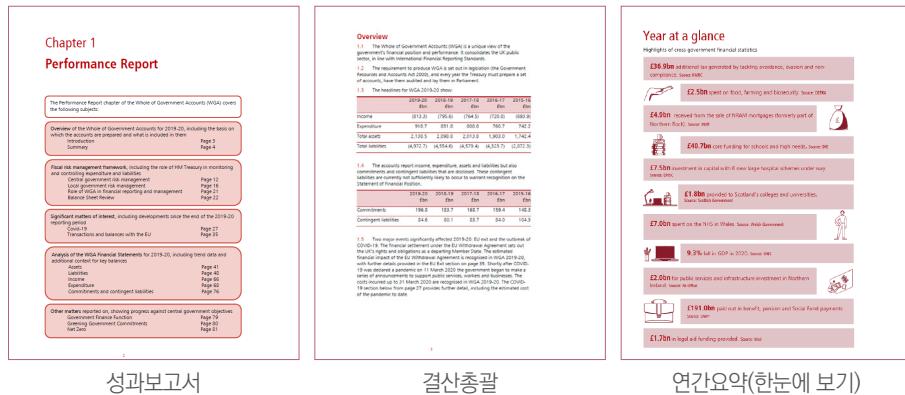
결산서 표지

목차

## 나. 제1장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

한국의 결산개요에 해당하는 성과보고서는 총 83페이지 분량으로 결산총괄(overview), 재정위험 관리체계, 주요 관심사항, 재무제표 분석, 기타사항 등을 다룬다.

**그림 2** WGA 제1장 성과보고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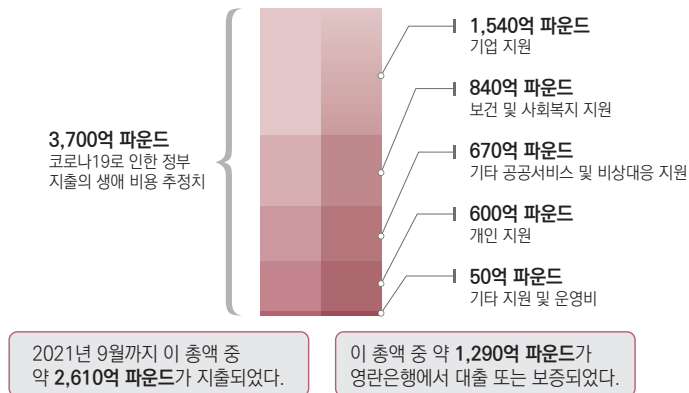
- 결산 총괄은 정부의 주요활동, WGA에 대한 설명, 연간요약, 수익·비용, 자산·부채, 우발부채 등 8가지 항목을 각 1페이지로 요약하고 도표화하여 정보이용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재정위험 관리체계는 재정상태 및 재정위험 관리에 대한 재무부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책임청에서 발표한 경제 및 재정 전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에서 WGA의 역할과 재정상태표 분석(Balance Sheet Review)에 관한 사항도 설명한다.
- 주요 관심사항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내역과 EU 탈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응 관련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직후, 정부는 공공서비스, 근로자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경제지원 패키지는 영국 평시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2020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 2020)와 2021년 예산에 명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기업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20~21년 및 2021~22년 기간 총 3,520억 파운드에 달한다. 2020년 예산에서 발표된 조치에는 상당한 자본 투자가 포함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 2년 동안 경제지원은 총 4,070억 파운드에 달하며, 이는 평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 패키지이다.

코로나19 조치는 2020년 3월 재무장관이 최초로 발표했다.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도가 시행될 때 부처에서 반영한다. 대부분의 경우 제도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시행되었기 때문에 WGA에는 대부분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WGA는 감사원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발표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였다. 감사원은 영국 정부 부처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코로나19 비용을 추산한 장치를 개발하였다. 코로나19 비용 장치는 발생한 비용의 추정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체 데이터 세트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이 추적 장치의 최신 버전은 2021년 9월에 공시되었으며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발표된 조치를 대상으로 한다.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으로 평생 비용의 추정치는 총 3,700억 파운드에 달한다.

**그림 3** 영국 감사원의 코로나19 비용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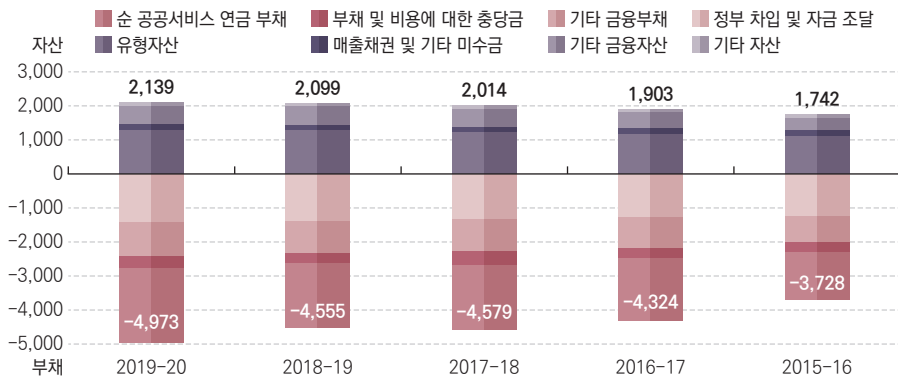


출처: NAO COVID-19 cost tracker

- 재무제표 분석은 총 38페이지의 분량으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약정사항 및 우발부채로 나누어 2019~20회계연도의 추세 데이터 등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자산 및 부채의 경우 구성항목 분석과 5개년 시계열 분석 등을 4개의 표와 24개의 도표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특이점은 재정상태표 공시 수준으로 설명하는 다른 주요구독과 달리 더 세부적인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sup>3)</sup> 이와 더불어 연금충당부채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금액 변동성이 큰 항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할인율, 민감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림 4** 시간 경과에 따른 영국의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 파운드)



출처: 영국 재무부,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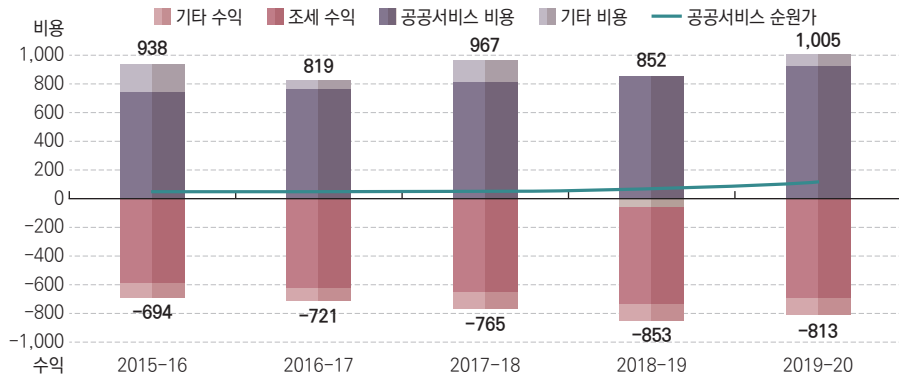
[그림 4]는 최근 5년간의 영국의 자산 및 부채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를 증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은 순 공공서비스 연금부채 및 충당부채 등 주요 부채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의 변화이다.

수익 및 비용의 경우도 자산 및 부채와 유사하게 구성항목과 시계열 분석 등을 표와 도표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

3) 예를 들어 영국의 재정상태표상에는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까지만 공시되나, 성과보고서에서는 유형자산의 세부 항목(사회기반시설, 토지 및 건물 등)과 더 나아가 사회기반시설과 토지 및 건물의 세부항목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5** 시간 경과에 따른 영국의 수익 및 비용

(단위: 십억 파운드)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

[그림 5]에 나타난 것처럼 지난 5년간 공공서비스 순원가(검은색 선으로 표시)는 118%(571억 파운드) 증가했다. 순원가는 2015~16년에서 2017~18년까지 대체로 변동이 없었으나 2018~19년에 증가했고 2019~20년에는 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주로 공공서비스 순원가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반대로 연간 총 순원가는 매년 급격하게 변동한다.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변동이 발생한 것은 총당부채에 사용된 할인율이 변경되면서 그 영향으로 총당부채의 금융비용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2016~17년에는 93억 파운드였으나 2017~18년에는 934억 파운드로 증가했고, 2018~19년에는 -1,015억 파운드로 감소했다. 2019~20년에는 새로운 총당부채가 인식되면서 총당부채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표 2>와 같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BOX를 통해 부연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한 정보를 원하는 정보 이용자와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정보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성이다.

## 표 2 상세설명 예시: 부채 및 총당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

### BOX 1.F: 부채 및 총당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

WGA의 일부 수치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이 중 연금 부채와 임상 과실과 같은 일부 총당부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다.

#### 보험수리적 평가란 무엇인가?

보험수리적 평가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가정해야 하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몇 년 후 지급액의 규모나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 각각에 대해 향후 지급액을 추정하여 평가 날짜로 할인한 후 합산한다.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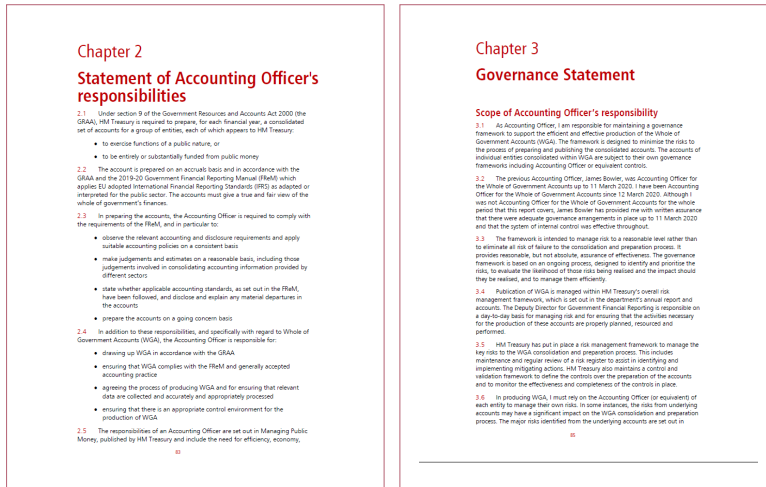
- 기타사항은 중앙정부 목표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재정 기능, 친환경(Greening), 탄소중립(Net Ze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 다. 제2장 회계책임보고서 및 제3장 거버넌스 확인서

영국 재무부는 2000년 「정부자원및회계법(the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GRAA)」 제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계책임보고서(Statement of Accounting Officer's responsibilities)는 각 기관들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 회계책임관이 재정보고지침(FReM)의 요구사항 준수 등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FReM은 EU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하거나 해석한 내용을 담은 결산작성지침이다.

WGA 회계책임관의 책임 중 하나는 거버넌스 확인서(Governance Statement)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확인서는 WGA 작성체계에 대한 회계책임관의 확인 사항이 담긴 문서로서, 한 해 동안 조직의 자원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설명한다. 회계책임관은 WGA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작성을 위해 작성구조 및 조직체계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으며, WGA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림 6 WGA 제2장 회계책임보고서 & 제3장 거버넌스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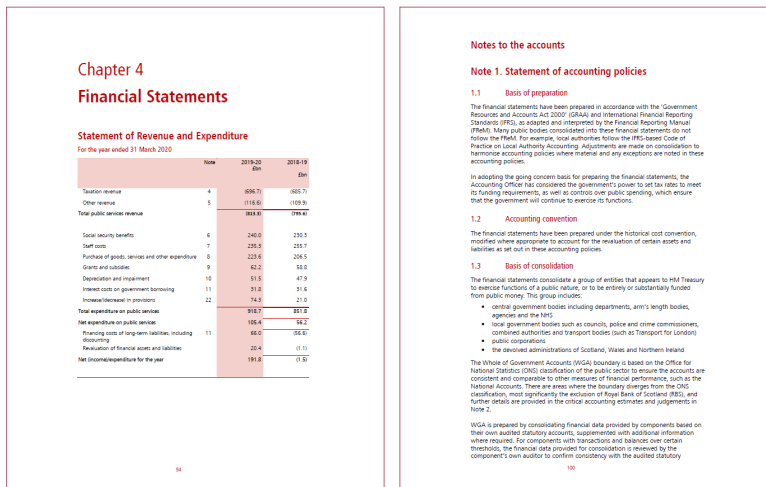
회계책임보고서

거버넌스 확인서

**라. 제4장 재무제표 및 주석**

영국의 재무제표는 총 5종으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재정상태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관련 주석으로 총 36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7 WGA 제4장 재무제표 & 주석**



재무제표(재정운용표)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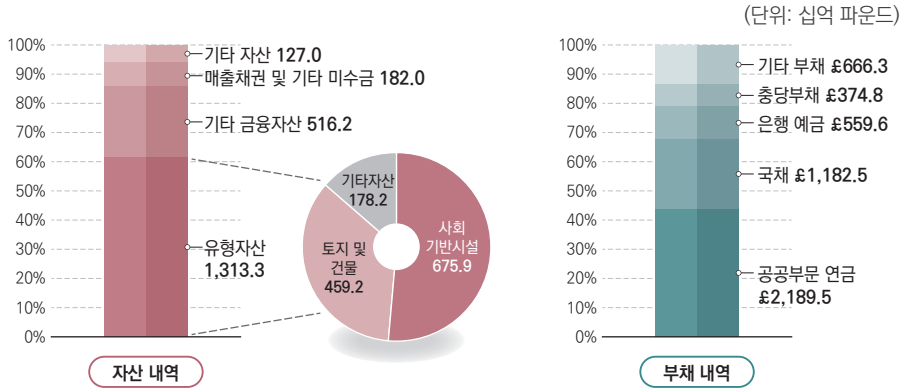
## 1) 자산 및 부채

2020년 3월 31일 현재 영국 정부의 총자산은 21조 3,850억 파운드이며, 전년 대비 3,970억 파운드(1.9%)가 증가하였다. 총부채는 49조 7,270억 파운드이며, 전년 대비 3조 7,840억 파운드(15.4%)가 증가하였다. 2020년 영국정부의 순자산은 3조 7,840억 파운드가 감소하여 2020년 3월 31일 현재 28조 3,420억 파운드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영국의 2020년도 GDP는 약 2조 7,570억 달러이다.

정부가 소유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유형자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미수금이다. 자산 중 약 62%가 유형자산이며, 그중 52%가 사회기반시설이다. 공공부문 사회기반시설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철도망이며, 그 가치는 3,323억 파운드(2018~19년: 3,288억 파운드)에 달한다. 기타 자산에는 무형자산 402억 파운드(2018~19년: 374억 파운드)가 포함된다. 무형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무형자산의 광범위한 정의에서는 지식, 기술 및 노하우를 포괄하며 공공가치를 더 폭넓게 고려한다.

영국 정부는 정부차입, 공공부문 연금부채, 기타 금융부채,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와 같은 여러 주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타부채는 장기 및 단기부채로 구성된다. 단기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미지급금, 단기국채 및 IMF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등이다. 장기부채의 범위는 다양한데, 예를 들면 2049~50년에 종료되는 민간투자개발사업(PFI), 2094년 종료로 추정되는 연금보호기금 충당부채, 다양한 조건의 금융리스 부채가 있으며, 여기에는 국방부가 군인을 위해 보유 중인 주택(174년 후에 계약 종료)도 포함된다.

**그림 8** 영국의 자산 및 부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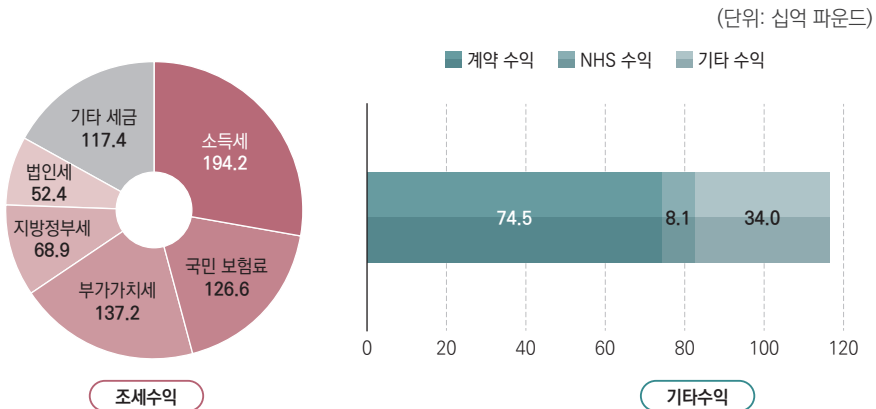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

## 2) 수익 및 비용

2020년 3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의 정부 수익은 8,133억 파운드를 기록했다. 조세 수익이 총 수익의 85.7%(6,967억 파운드)를 차지하며, 이 중 99.3%는 영국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에서 징수한 것이다. 2019~20년 HMRC의 총 수익은 기록적인 수치였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자진 세금신고서의 성과는 역대 최고였으며, 조세 회피, 탈세 및 세금 미납 사례를 해결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총 조세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은 소득세, 국민보험료, 부가가치세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세금 관세도 포함된다.

**그림 9** 영국의 수익 구성



출처: 영국 재무부, 「영국 공공부문 통합결산서,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year ended 31 March 2020」, 2022.

비용(공공서비스 원가)은 총 9,187억 파운드로 집계되었다.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회보장급여 2,400억 파운드(2018~19년: 2,303억 파운드), 인건비 2,353억 파운드(2018~19년: 2,557억 파운드) 및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2,236억 파운드(2018~19년: 2,065억 파운드)이다.

### 3) 유용한 주식정보

영국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식 36종으로 제공한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이후 2종의 주식이 추가되었다(34. 금보유고, 35. 매각예정자산). 일반적으로 주식은 상단의 표 형식과 하단의 설명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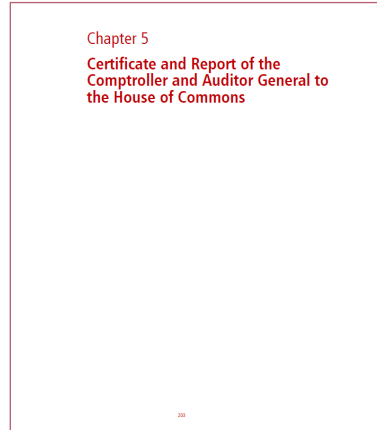
재정상태표에 연계된 주식 번호는 자산과 관련하여 11개, 부채와 관련하여 7개로, 총 18개의 주식을 공시하고 있다. 이 중 14개는 재정상태표상에 직접 번호가 연계되어 있으며, 4개는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자산 또는 부채와 연관된 주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식 '10. 감가상각과 손상'은 재정상태표상 주식 번호로 연계되어 있지 않지만 자산과 부채에 연계된 주식항목이 존재하며, 이들 주식은 다시 관련 있는 주식과 연계되는 방식을 보인다.

재정운영표에 연계된 주식 번호는 총 9개이며, 모든 주식 공시사항이 연계된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금액의 세부금액 정보를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표는 주로 당해 계정과목을 구성하는 하위 유형에 관한 정보와 그 금액 및 비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와 더불어 많은 주식항목에서 증감원인, 관련 법·제도,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 재무제표에 친숙하지 않은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기타 부가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마. 제5장 감사원장 메시지

감사원장 메시지는 WGA가 감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감사의견, 의견에 대한 근거 및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대해 표명하고 있으며 감사원장의 서명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회계연도에 발생한 WGA의 상당한 공시 지연의 원인이 새로 도입한 회계 시스템인 OSCAR II를 구현하는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 결산서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이를 재무부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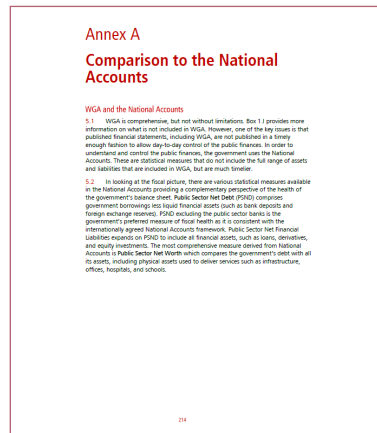
그림 10 WGA 제5장 감사원장 메시지



## 바. 부록: 국민계정과 WGA 비교

공공재정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은 WGA보다 더 포괄적이지만, 더 신속하게 작성되며 국제기준을 따르므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반면에 WGA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되고, 이 기준은 공공부문의 맥락에 맞게 해석되고 조정되지만 전반적으로 민간부문과 유사한 기준으로 작성되며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WGA와 국민계정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WGA가 지원하는 추가 분석(예: 예산책임청의 재정위험보고서 및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을 통해 재정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공공재정의 전반적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국민계정을 통해 적시성 있는 정보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림 11 WGA 부록 국민계정과 WGA 비교



국가회계  
재지통계



#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22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22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2022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01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앞두고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Ⅲ), (Ⅳ)」을 발간하였다. 「2022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Ⅲ), (Ⅳ)」은 국가결산 개설, 결산보고서 작성양식, 디브레인(dBrain)을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2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2022. 12. 5., KMAC 마포 비즈니스스쿨 교육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2년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중앙관서 결산교육을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92명의 중앙관서 결산 관련 공무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는 결산담당자들에게 국가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으로 결산보고서 제출 일정과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및 2021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02 2022년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결과

‘2022년도 국가회계전문교육’이 지난 6월 22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 관계 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였다. 올해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대면 교육과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교육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제13차 재무결산실무 교육(2022. 10. 28.,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의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과정을 국가회계 교육포털(<http://www.kipf.re.kr/edu/>)에서 직접 신청하여 들을 수 있다. 특히 10월에는 재무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결산실무 과정이 2회(회당 2일간) 실시되었다. 본 과정은 국가 재무결산의 이해,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가회계전문교육 수행 결과, 13회차에 걸쳐 총 1,018명(전년도 1,250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58점(전년도 4.50), 강사 만족도는 4.61점(전년도 4.53), 교육 환경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는 4.66점(전년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 만족도 4.46)으로, 3년만의 대면 교육 운영과 신규로 설치한 본원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비대면 교육 방식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내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은 2023년 5월 중순부터 국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 2022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 동안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2022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집합교육에서는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박성주 과장이 결산기간 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한국재정정보원 정혜원 부장이 차세대 dBrain의 2022회계연도 개선사항 등을 소개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윤성호 팀장이 2022회계연도 지침 개정사항 및 재무결산 유의사항을 교육하였다.



2022년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2022. 11. 25., 롯데리조트 부여)

올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결산담당자 집합교육을 주관한 네 번째 해로, 충실한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 내용, 그리고 운영진의 행사지원 등으로 높은 행사 만족도(4.90/5.0만점)를 달성하였다.

## 04 2022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22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22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선관서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2월 1일과 2일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결산 및 국유재산·조달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4,531명의 결산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 사례, 국유재산 결산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 관련 디브레인(dBrain)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하여 향후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14차시(2022. 11. 29., KMAC 마포 비즈니스스쿨 교육장)



# 재정통계 동향



•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 01 2021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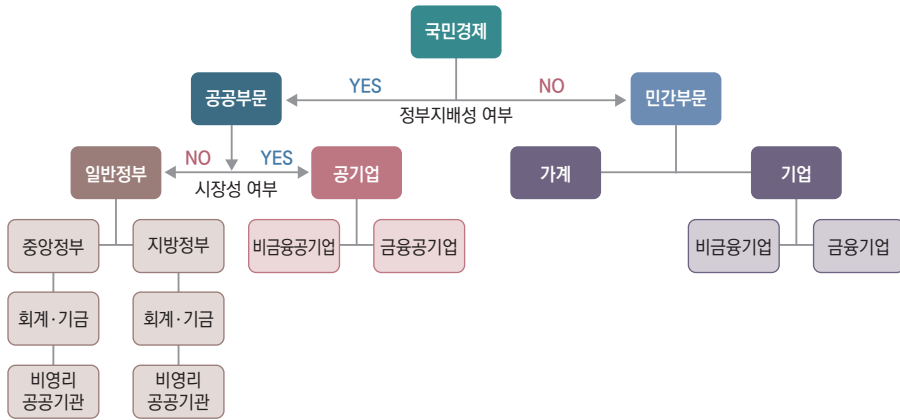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15일(목)에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 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가. 산출 범위

####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정 기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이 80% 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알기쉬운 재정통계』, 2022, p. 33.

2021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500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42개 기관은 정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 시장성이 있는 158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2021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3조원(GDP 대비 68.9%)으로 전년(1,280.0조원) 대비 147.4조원(GDP 대비 2.9%p) 증가하였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일반정부 부채(D2)가 전년 대비 121.1조원(GDP 대비 2.8%p) 증가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1.6조원(GDP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두 부문 간의 내부거래는 5.4조원(GDP 대비 0.0%p) 증가하였다.

표 1 공공부문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공공부문 부채(=①+②+③)	1,280.0	66.0	1,427.3	68.9	147.4	2.9
일반정부(①)	945.1	48.7	1,066.2	51.5	121.1	2.8
비금융공기업(②)	408.1	21.0	439.7	21.2	31.6	0.2
- 중앙 비금융공기업	369.7	19.0	403.6	19.5	33.9	0.5
- 지방 비금융공기업	46.2	2.4	46.1	2.2	△0.1	△0.2
- 내부거래	△7.8	△0.4	△9.9	△0.5	△2.2	△0.1
내부거래(③)	△73.3	△3.8	△78.6	△3.8	△5.4	0.0

주: 이하 재정통계 동향 모든 표의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12. 15.(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이하 재정통계 동향 모든 표 동일)

##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각각 117.8조원 및 6.9조원 증가하였고,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는 3.5조원 증가하여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 대비 121.1조원 증가한 1,066.2조원(GDP 대비 51.5%)이고 GDP 대비로는 2.8%p 증가하였다.

표 2 일반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일반정부 부채(=①+②+③)	945.1	48.7	1,066.2	51.5	121.1	2.8
중앙정부(①)	898.4	46.3	1,016.2	49.1	117.8	2.8
- 중앙 회계·기금	857.7	44.2	975.7	47.1	118.0	2.9
-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53.7	2.8	54.3	2.6	0.6	△0.2
- 내부거래	△13.0	△0.7	△13.9	△0.7	△0.9	0.0
지방정부(②)	63.0	3.2	69.9	3.4	6.9	0.2
- 지방 회계·기금	63.2	3.3	68.9	3.3	5.7	0.0
· 지방자치단체	56.6	2.9	64.0	3.1	7.4	0.2
· 교육자치단체	6.6	0.3	4.9	0.2	△1.7	△0.1
-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1.0	0.0	2.9	0.1	2.0	0.1
- 내부거래	△1.2	△0.1	△2.0	△0.1	△0.8	0.0
내부거래(③)	△16.2	△0.8	△19.8	△1.0	△3.5	△0.2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12. 15.를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

### 가) 중앙정부 부채

2021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898.4조원(GDP 대비 46.3%) 대비 117.8조원이 증가한 1,016.2조원(GDP 대비 49.1%)으로 산출되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중앙 회계·기금, 중앙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중앙정부 부채가 전년 대비 117.8조원 증가한 것은 주로 중앙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 (1) 중앙 회계·기금

2021회계연도의 중앙 회계·기금은 전년 857.7조원(GDP 대비 44.2%) 대비 118.0조원이 증가한 975.7조원(GDP 대비 47.1%)으로 산출되었으며, 채무상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중앙 회계·기금 채무상품 유형별 부채

(단위: 조원)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2021년 부채 구성 내용
합계	857.7	975.7	118.0	
채무증권	715.0	815.8	100.9	국채(933.8), 공채(19.9), 연기금 보유 국공채(△137.8)
차입금	96.3	108.8	12.5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96.3), 민자사업 부채(9.0) 등
기타 미지급	46.4	51.1	4.7	미지급비용(15.2), 미지급금(6.4) 등

(채무증권) 채무증권이 100.9조원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110.4조원, 국민주택채권 3.3조원, 자기 국·공채 15.5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표 4 중앙 회계·기금 채무증권 부채

(단위: 조원)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합계	715.0	815.8	100.9
◆ 국채	818.4	933.8	115.4
국고채	730.0	840.4	110.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5	11.2	1.7
국민주택채권	78.9	82.2	3.3
◆ 공채	18.9	19.9	1.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5	0.0	△1.5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7.5	19.9	2.4
◆ 자기 국·공채	(122.4)	(137.8)	(15.5)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2021회계연도 기금 재무제표」, 2022.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이 12.9조원 증가하여 차입금이 전년 대비 12.5조원 증가하였다.

## (2) 중앙 비영리공공기관

2021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53.7조원(GDP 대비 2.8%) 대비 0.6조원이 증가한 54.3조원(GDP 대비 2.6%)으로 산출되었다.

## 나) 지방정부 부채

2021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63.0조원(GDP 대비 3.2%) 대비 6.9조원이 증가한 69.9조원(GDP 대비 3.4%)으로 산출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지방 회계·기금, 지방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하고 둘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전년 대비 6.9조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 회계·기금 5.7조원,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2.0조원, 내부거래 0.8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표 5** 지방정부 부채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지방정부 부채	63.0	3.2	69.9	3.4	6.9	0.2
회계·기금	63.2	3.3	68.9	3.3	5.7	0.0
· 지방자치단체	56.6	2.9	64.0	3.1	7.4	0.2
· 교육자치단체	6.6	0.3	4.9	0.2	△1.7	△0.1
비영리공공기관	1.0	0.0	2.9	0.1	2.0	0.1
내부거래	△1.2	△0.1	△2.0	△0.1	△0.8	0.0

### (1) 지방 회계·기금

2021회계연도의 지방 회계·기금은 전년 63.2조원(GDP 대비 3.3%) 대비 5.7조원이 증가한 68.9조원(GDP 대비 3.3%)으로 산출되었다. 지방 회계·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회계·기금의 부채가 전년 대비 5.7조원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7.4조원 증가한 반면 교육자치단체는 1.7조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전년 56.6조원 대비 7.4조원 증가한 64.0조원으로 지방채, 차입금 등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별 증가액이 큰 순으로 살펴보면 서울(4.2조원), 경기(0.9조원), 부산(0.6조원), 제주도(0.5조원) 등이다.

**(나) 교육자치단체**

전년 6.6조원 대비 1.7조원 감소한 4.9조원으로, 장·단기차입금 및 민자사업(BTL) 등이 감소하였다.

**(2) 지방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1.0조원 대비 2.0조원 증가한 2.9조원으로 부산교통공사(1.3조원) 등 15개 기관의 분류 범위를 비금융공기업에서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채가 1.6조원 증가하였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408.1조원(GDP 대비 21.0%) 대비 31.6조원 증가한 439.7조원(GDP 대비 21.2%)으로 집계되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중앙 비금융공기업,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하고 비금융공기업 간의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전년 대비 31.6조원 증가한 것은 주로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33.9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한전·발전자회사(11.6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9.0조원), 한국가스공사(5.9조원)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라. 부채 유형별(D1, D2, D3) 추세 분석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의 경우 D1, D2, D3 모두 2019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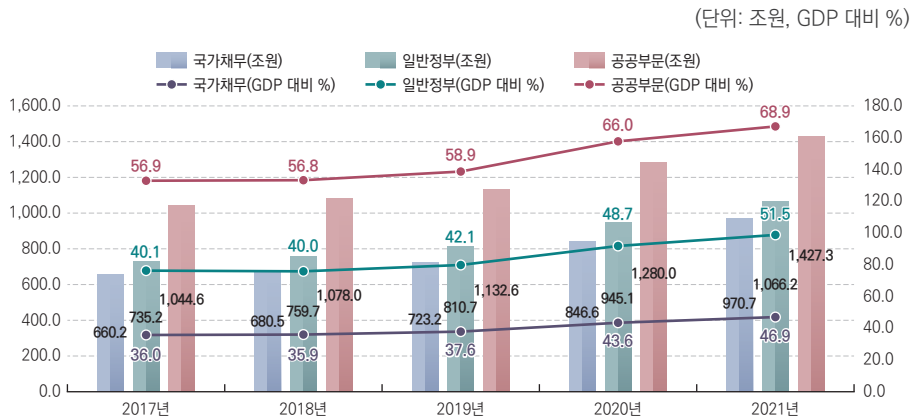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2018년) △0.1%p → (2019년) 1.7%p → (2020년) 6.0%p → (2021년) 3.3%p

일반정부부채(D2): (2018년) △0.1%p → (2019년) 2.1%p → (2020년) 6.6%p → (2021년) 2.8%p

공공부문부채(D3): (2018년) △0.1%p → (2019년) 2.1%p → (2020년) 7.1%p → (2021년) 2.9%p

**그림 2** 부채 유형(D1, D2, D3)에 따른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 12. 15.; 『월간 재정동향』, Vol. 107, 2022. 12. 15.를 참고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회계  
재지통계



# 센터 동향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부회계인상 수상
-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결과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간보고
-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최종보고회 개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부회계인상 수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수여하는 정부회계인상 기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부회계학회는 2022년 12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내 정부회계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정부회계인상을 수여했다. 수상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국경제신문사 등 총 4곳이 선정되었으며, 개인 수상자로는 윤성식 고려대 명예교수와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선정됐다.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2022. 12. 9.,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022년 12월 5일(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하였으나, 올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2022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26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0개)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박윤진 재정통계팀장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및 절차, 2021 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사전제출, 회계결산 FAQ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최지영 회계사의 주요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이뤄졌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실무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2022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2022. 12. 5.,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

##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실시 결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실시를 계획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을 위탁받아 2022년 처음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소 및 희망 교육인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서울 3회(은행회관, 섬유센터), 세종 1회(컨벤션센터) 총 4회(9~11월) 각 차시 100명 내외 규모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1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일정

(단위: 명)

차시	장소	일정		참석인원
		신청기간	교육기간	
1차	서울(은행회관)	2022.9.6. ~ 2022.9.19.	2022.9.22. ~ 2022.9.23.	87
2차	세종(세종컨벤션센터)	2022.9.6. ~ 2022.10.7.	2022.10.13. ~ 2022.10.14.	97
3차	서울(섬유센터)	2022.9.6. ~ 2022.10.21.	2022.10.27. ~ 2022.10.28.	128
4차	서울(섬유센터)	2022.9.6. ~ 2022.11.11.	2022.11.17. ~ 2022.11.18.	121

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http://www.kipf.re.kr/pedu/>)

회계교육 강의는 교재를 집필한 교수진인 전규안(충실대), 한승엽(홍익대), 선우희연(세종대) 교수와 이지훈 회계사(진일), 그리고 센터에서 맡았으며, 금융상품, 유형자산, 수익 등 주요 계정에 대한 이론 설명과 외부 회계감사 오류사례, 정부보조금, 결산서 작성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이틀간 총 14시간에 걸쳐 운영하였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커리큘럼

차시	교육과목	주요내용
1일차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1. 회계의 기초 2. 재무제표의 종류 3. 회계순환과정
	수익	1. 수익인식모형 2. 수익인식 회계처리
	채권, 총당부채와 우발부채	1. 화폐의 시간가치 2. 채권, 총당부채, 우발부채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1. 금융자산, 특수한 지분투자
	유무형자산 및 리스	1. 유무형자산 2. 사용권자산(리스)
2일차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정부보조금	1.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1.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결산서 작성방법	1. 결산개요 2. 회계처리, 결산, 주석 작성 유의사항

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http://www.kipf.re.kr/pedu/>)

공기업 29개, 준정부 74개 기관 등에서 총 43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수료 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정이나 환경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회계기준에 대한 강의를 교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특화된 사례를 외부 감사인을 통해서 들어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다만 한정된 교육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 교육이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의견과 한 회당 수강생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개진되어 교육구성이나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만족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평균
교육과정	4.13	4.33	4.19	4.33	4.24
교육환경	4.23	4.44	4.08	4.38	4.26

주: 1차(60명), 2차(66명), 3차(93명), 4차(61명) 응답

출처: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http://www.kipf.re.kr/pedu/>)을 통한 설문조사 저자 재구성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수강생의 설문의견을 바탕으로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환경을 점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회차(2022. 9. 22.~9. 23., 서울 은행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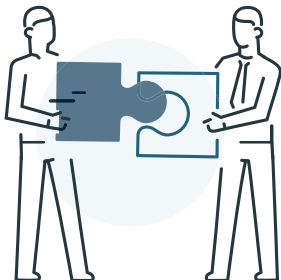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간보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세청 수탁연구과제인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중간보고회를 2022년 11월 21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연구는 공익법인의 개정 법령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사항이 도입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과 박인호 과장과 김지연 팀장, 성이택 주무관이 참석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박성진 소장을 비롯한 박윤진 팀장, 최종갑 회계사, 김나영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이 처해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 제도 및 회계감사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12월 9일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최종보고회 개최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최종보고회는 2022년 11월 2일(수) 9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조형태 홍익대학교 교수, 김진옥 건국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각자의 세부 연구주제에 대해 최종발표를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박성진 소장, 양은주 초빙연구위원,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표 1**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세부 연구주제

구분	연구주제	연구자
<b>대주제: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정부회계의 역할</b>		
1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김봉환(서울대)
2	국가채무 및 부채지표 재설계: 발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정희(서울시립대)
3	국가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공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해외 주요국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최연식(경희대)
4	국민 삶의 질과 결산보고서 연계에 대한 검토	조형태(홍익대)
5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용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김진옥(건국대)

첫 번째 주제인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에 대해 김봉환 교수가 발표하였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시된 확장적 재정운용과 이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위험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 각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정위험에 관한 분석을 하나의 보고서로 종합하여 ‘재정위험관리보고서’로 발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IMF와 World Bank의 공적채무관리지침과 영국의 재정위험보고서 등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발간을 위한 제도적 및 운영적 토대와 적용 가능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국가채무 및 부채지표 재설계: 발생주의의 도입을 중심으로’에 대해 이정희 교수가 발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

기 위해 국가채무지표와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발생주의 방식에 의한 재무위험 측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국가채무지표 및 재정통계의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재정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편, 발생주의 평가방식을 적용한 국가부채 추계와 관리목적의 특수목적 채무통계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국가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공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해외 주요국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해 최연식 교수가 발표하였다. 우발부채는 실제 발생 시 큰 지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나, 명시적으로 국가재무제표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는 현행 공시 현황에서 주석처리의 재량성이 커 우발부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주석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발부채 관련 용어의 통일, 주석 체계의 세분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연계,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의 구분 등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주제인 ‘국민 삶의 질과 결산보고서 연계에 대한 검토’에 대해 조형태 교수가 발표하였다. 재정활동의 목적이 국민에게 공공재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결산회계정보가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재정보고를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예결산 보고서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할 수 있는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안으로 COFOG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섯 번째 주제인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용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대해 김진욱 교수가 발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에 대하여 조직 관점의 접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에 따라 불용액이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불용액 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자체는 불용액 비율이 낮으며, 젊은 지방자치단체장일수록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별에 의한 불용액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 세미나



-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 2022 국세행정포럼
-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



### 가. 개요

- 주 제: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
- 일 시: 2022. 11. 3.(목) 14:00~16:50
-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참가자 및 해외 발표자는 웹 심포지엄으로 실시간 동시 진행  
(<https://gafsc-seminar.kr>)
- 프로그램

#### [개회]

-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축 사]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 [업무협약 체결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회계학회

#### [국가별 주제발표]

- [발표 1]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최연식 교수)
- [발표 2]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Manj Kalar)

#### [종합토론]

- 각 기관 관점별로 보는 우발부채의 범위
- [좌 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패 널]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최성훈 감사원 부감사관, 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Ross Smith IPSASB 국장, 국가별 발표자 5명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제3회 KIPF 발생주의 국제심포지엄(이하 국제심포지엄)'을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11월 3일에 전국은행연합회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국제심포지엄에는 관계부처, 국회, 학계, 회계전문가 등 국내 인사와 IPSASB, OECD 관계자, 필리핀 감사원 등 해외 인사를 포함하여 총 126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발생주의 정보를 활용한 재정위험관리’를 주제로 열린 제2회 국제심포지엄의 연속 시리즈로, 지난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우발부채’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의 우발부채 관리 현황을 짚어 보고, 우발부채 모범 관리국인 영국 사례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 우발부채란 미래에 벌어질 사건의 결과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불확실한 의무로,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부만 비재무적인 정보로서 결산보고서의 주석으로 공시되는데, 미래에 특정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여 재정지출이 현실화되면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통제와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본 국제심포지엄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양 기관은 공공부문 회계에 대한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활발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회사 및 축사〉



〈업무협약 체결식〉

개회식 이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연식 경희대 교수가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맨지 칼리(Manj Kalar) 대표가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에 대해 각각 30분씩 발표하였다.



〈국가별 주제발표〉

이어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최성훈 감사원 부감사관, 아이버 비즐리(Ivor Beazley) OECD 예산 공공지출국 팀장, 로스 스미스(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자들은 재정 및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재정당국, 예산 심의 등에 있어 정부의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감시자인 국회, 결산 검사를 통해 재정위험 식별할 수 있는 결산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하는 감사원, 발생주의를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기구를 대표하여 구성되었다. 공통적으로 토론자들은 우발부채의 중요성과 재정위험 현실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고, 우발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발부채 관리개선 방안으로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정부와 금융,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확장된 관리가 필요하고, 재무제표 공시의 한계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고서 발간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종합토론〉

센터는 매년 11월 초에 해외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며, 2023년에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를 주제로 선정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웹 심포지엄 전체 영상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outube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문) <https://www.youtube.com/watch?v=F8VnSa7OIlk>

(영문) [https://www.youtube.com/watch?v=3ILbEhmiJ\\_o](https://www.youtube.com/watch?v=3ILbEhmiJ_o)

##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주제 및 주요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p>◆ 한국 발표: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발부채 관련 시장규율의 제약과 이해관계자(국회 등)의 관심 부족 및 우발부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실무적인 어려움 등으로 정부부문의 우발부채 관리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li> <li>해외 사례 국가들을 참고하여 우발부채를 '계량화' 가능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우발사항 검토표 등을 활용하여 우발부채의 충실성·완전성 증가를 제안</li> </ul>	<p>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p>

주제 및 주요내용	발표자 및 토론자
<p><b>◆ 영국 발표: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은 감사원 보고서상 우발부채 현실화로 재정위험에 관심을 갖고, 2017년 이후 우발부채 승인체계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정부의 최후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따른 우발부채를 관리 중에 있음</li> <li>• 우발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우발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 조직인 CLCC를 구축함</li> <li>• 정부 부처 중 우발부채 비중이 높은 부처인 UK EF의 우발부채 관리사례를 모범사례로 제시함</li> <li>• CLCC와 UK EF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우발부채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숙련 인력과 조직, 데이터 수집, 판단 기준, 일관성 및 명확한 정의 등 10가지 교훈을 제시하였음</li> </ul>	<p>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p>
<p><b>◆ 종합토론(좌장: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및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현행 회계기준보다 더 확장된 범위의 우발부채를 고려해야 함</li> <li>• 현재 중앙정부 재정 대상에서 지방정부와 금융·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이 정부의 다양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보험 및 약정으로 인한 우발부채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위험 관리가 필요함</li> <li>• 재정지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입장에서 우발부채 주석의 완전성을 강화시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예산 심의 등에 활용할 수 있음</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명확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설립 근거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 등도 우발부채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해야 함</li> <li>• ISD 패소 확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 이슈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발부채 관리를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국회 예산 심의 측면 등 다각도로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우발부채 공시 분류체계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에 위험을 파악해야 함</li> <li>• OECD, IMF, IFAC 등 국제기구에서 먼저 우발부채 관리 모범사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에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영국의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고 실행 중인 것으로 보임</li> <li>•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와 유사하게 IPSASB도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해 RPG라는 가이드라인인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li> </ul>	<p>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p> <hr/> <p>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p> <hr/> <p>최성훈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사관</p> <hr/> <p>Ivor Beazley 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p> <hr/> <p>Ross Smith IPSASB 국장</p>

## 【발표 ①】 한국의 우발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 Korea cas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Contingent Liabilities in the Public Sector

#### »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우발부채 현실화로 인해 공공부문의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재정위기를 촉발할 사례가 다수 보고되며, IMF 등 국제기구도 GDP 대비 채무비율의 예상치 못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우발부채를 꼽음
- 코로나19 이후 3년간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수지가 누적적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국가채무도 꾸준한 상승세에 있음
- 그러나 시장규율의 제약과 이해관계자(국회 등)의 관심 부족 및 우발부채의 본질적 속성인 '불확실성'에 기인한 실무적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 한국 우발부채의 공시 현황

- 한국은 국가결산서 주석 5번 항목에 우발사항과 약정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8개(계류 중인 소송사건, 담보, 파생, 지급보증, 중요한 계약사항, 천재지변 등, MRG, 기타)의 공시항목으로 표준화되어 있음
- 우발부채 공시 여부와 공시 수준 등은 개별 중앙관서의 실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공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 우발부채는 2016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약 5개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1.31~2.06%에 해당함

#### » 해외 주요 국가의 우발부채 공시 사례

- 해외 우발부채 공시 사례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함
-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발상황의 발생조건을 구체화하여 실무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우발상황의 중대성 등을 차별화하여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수립 가능하게 함

- 일반적인 우발부채와 별도로 정책, 제도에 따른 재정소요(순부담)를 공시하거나, 중요성 기준 금액을 설정하여 초과하는 항목을 개별적으로 상세 설명
- 우발부채 항목을 계량화하고 있으며 개별 사항의 개요, 우발적 요소, 진행 경과, 향후 전망 등 체계적으로 공시

» 우발부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 국제사회(기구)와 협약·조약·협력, 공공기관 출자 및 출연 등의 항목을 추가 신설로 제안함
- 우발상황 주석에서 우발자산은 분리하고, 파생상품도 별도 주석으로 분리하여 공시
- 해외 사례국가들을 참고하여 '계량화'시켜 유형별 공시
- 우발사항 검토표(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우발부채의 충실성·완전성을 제고하고, '재무공시 품질대상' 등 인센티브 마련

**[발표 ②]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UK case: Analysing the Effect of Contingent Liability Management**

» 영국 우발부채의 개요

- 영국은 우발부채를 보증, 배상, 소송, 구매자 보호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 분류하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발부채뿐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까지 추가로 개별 부처의 결산서와 「공공부문통합결산서(WGA)」에 공시함
- 한화로 영국의 우발부채는 약 750조원으로, 이 중 희박한 우발부채는 614조원(2019~20회계연도 기준)에 해당함
-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보증제도(Government Guarantee Scheme) 상위 6개는 총 189.1조원이며, 이 중 28.8조원이 현실화되어 지출됨

## » 우발부채 승인체계(Approval Framework)

- (승인체계 도입 이전) 먼저 부처별로 승인을 받은 후 재무부 수석 차관과 고위 공무원의 관리 감독 등을 통해 2차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시 이뤄지는 모니터링 관리체계하에 공공부문통합결산서 등에 공시됨
- (승인체계 도입 이후, 2017~) 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정책담당 공무원이 사업에 대해 평가하며, 이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함
- 이 과정에서 재무부와 그 사업수행팀에서 위험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며,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부채를 부담할 재정여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함
- 1차적으로 재정 위험에 대해 부처가 책임을 지지만,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에게 채무가 분담됨
- 우발부채 승인체계는 5단계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며, 신규 사업이거나 우발부채가 300만파운드 이상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사업인 경우 평가대상이 됨
-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위험과 이익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이 감당하는 민간부분의 위험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경험적으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됨



## » 정부의 최종보험자 역할

- 승인체계 도입 이후 ‘정부의 최종보험자역할’ 보고서가 발간됨.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우발부채를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됨
- IMF, OECD는 암묵적 우발부채를 계량화하여 명시화하는 것을 권고함. 암묵적 우발부채는 민간부문에서 부담하지 않고 정부 역시 공식적인 법적 의무가 없으나,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말함

-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가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희박한 우발부채의 식별 문제가 더 중요함

» 우발부채 중앙관리단(CLCC)

- CLCC는 2021년에 설립되어 정부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우발부채와 관련한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급보증과 배상 부문을 다루고 있음
- 올해 CLCC는 전문가 검토 보고서인 *Exploring the UK Government's Contingent Liabilities*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계량화 가능한 우발부채 금액은 2,160억 파운드 로 GDP의 9%에 해당하고, 집계된 326개의 우발부채 중 137개가 계량화, 189개가 비계량화된 우발부채임
- 2017년부터 임상 과실배상 등 민간부문에 청구된 부분은 17%에 해당하나, 청구된 것은 25건, 미청구는 58건으로 미청구에 대해서는 CLCC가 정부부처 등을 통해 개선할 예정
- CLCC는 향후 범정부적인 데이터베이스 수집, 중앙정부 데이터 통합, 우발부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행을 목표로 함



» UK Export Finance(영국 수출 신용, UK EF)

- 1919년에 설립되어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보험이 부족하여 수출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증하는 기관으로, 정부 부처 중 재정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임
- UK EF는 최소의 위험을 설정하면서도 포괄적인 위험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 프로파일 테일(Risk Profile tale)이 50억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 UK EF 보고서상 청구권 회수시기와 청구시기가 불일치하나 효과적으로 모두 회수하였으며, 금융·비금융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발부채 승인체제 규정을 준수함을 알 수 있음

## » 시사점

- (CLCC 측면) 첫째, 데이터, 추정사항, 판단 기준, 편향(bias)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함. 둘째, 우발부채 관련 일관성과 정의가 중요하고, 셋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지, 그리고 회계, 신용, 보험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UK EF 측면) 첫째, 우발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며, 둘째, 보다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함. 셋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험을 이해해야 함

## [종합토론] 각 기관 관점별로 보는 우발부채의 범위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 한국 우발부채 범위(재정당국 입장)

- 국가회계기준상 부채의 인식과 측정 기준은 일반목적 국가 재무제표의 작성을 목적으로, 일반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함. 반면 재정통계는 정책결정자 등을 주요 정보이용자로 하고 있어 반드시 일반목적 작성에 적용되는 틀을 따를 필요는 없음
- 따라서 우발부채 범위 논의에 있어서는 어떤 정보이용자를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
- 재정 및 위기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정당국은 회계 기준보다 확장된 범위의 우발부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종합하면 중앙정부 재정으로만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금융,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최종보험자(insurer of last resort)'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함



## » 영국 우발부채 관리 사례

- 영국의 공공부문통합결산보고서(WGA)는 단순히 공공부문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정부부처 개별 단위수준이 아니라 거시적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초 토대를 마련함
- 한국도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출의 효과가 보조금 또는 공기업 지원 등으로 누수되지 않도록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재정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회계 기준보다 더 넓은 범위의 우발부채를 고려할 필요성을 언급함. 우발부채를 보다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측정 기준으로 일반 재무제표보다 업데이트된 재정관리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 비금융공기업도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이은경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 » 한국 우발부채 범위(국회 입장)

- 한국의 다수의 재정사업 등은 약 350개 여의 공공기관을 통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 공공기관의 총지출은 정부의 총지출을 현저히 넘어서는 수준으로 규모가 상당함
- 즉 공공기관이 정부의 다양한 재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보험 및 약정으로 인한 우발부채는 재정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재무제표 주석에 중앙관서의 우발부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가 100% 출자 중인 공공기관의 우발부채(보증 등)는 공시하지 않음
- 따라서 미래 지출 유발 가능성 대응 측면에서 중앙정부에만 국한한 우발부채 관리를 넘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재정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정지출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보고서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이는 제한된 세입 재원 내에서 재정지출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도 사전적으로 위험 인지 및 대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우발부채 공시의 완전성

- 단년도 중심의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예산 편성과 심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관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올해 향후 10년 동안 4조원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안이 편성됨
- 또한 200조원 규모가 소요되는 총사업비, 한국모태펀드의 정책펀드에 대한 약정,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상황을 위한 정부지원계획 등 중장기적인 지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지출 가능성 및 추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미흡함
- 현재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보증채무를 중심으로 주석에서 공시하는 수준에 그치며, 개별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에 대해서는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 재무제표상 우발부채 주석의 완전성을 강화하고, 부처의 보증 및 보험사업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과 지급보증 등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공공기관의 우발부채도 정부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에 해당하고, 정부가 놓친 우발부채의 예시를 들며 이들이 결국은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음

## 최성훈 감사원 공공감사지원국 부감사관

## » 한국 우발부채 범위(감사원 입장)

- 한국은 우발부채를 소송, 지급보증 등 법령상 명확한 경우에만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설립 근거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발부채는 관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전력공사 등 다수 공기업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채의 경우 유사 시 정부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신용도를 평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발부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우발부채 확대와 관련하여 우발부채 관리의 효익과 우발부채를 식별하고 공시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우발부채 연계성 부족의 문제

- 우발부채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국회의 예산 심의 측면에서 연계성 부족의 문제가 발생함
- 예컨대 최근 정부는 이란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ISD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관련 예산(예비비) 부족 등으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은 상태임. 그 외에 론스타, 앨리엇 등 다수 ISD를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 만일 ISD 진행 경과에 따라 적절히 우발부채로 관리하고, 이러한 관리를 토대로 배상금 지급 재원을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는 등 확정된 배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였다면, 그로 인한 국가신인도 훼손이나 지연이자 등 국고 낭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최근의 한국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국정부의 보증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현실을 지적함. 이런 유형의 우발부채도 국가결산서에 공시해야 함을 언급함. 즉 발생주의 회계 도입의 이유가 우발부채를 건전성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함

**Ivor Beazle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산공공지출국 팀장**

»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

- 우발부채는 OECD 내에서도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민간부문의 대출 등 지원이 많아져 우발부채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위험과 재정지속성을 위한 공시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과 재무제표만으로 정부가 총 얼마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였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까운 미래에 또 언제 발생할지 혹은 금리 상승, 부채 증가, 유가 상승 등의 채무불이행과 기후변화도 현실화되는 문제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함



» **한국 우발부채 범위(OECD 입장)**

- 향후 한국은 우발부채 공시 분류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정부 특성상 민간부문과 달리 최후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는 계량화할 수 없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우발부채는 계량화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규모나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회계 측면 이외에도 더 구체적인 정보 공시 및 분석이 필요함
- 또한 그 위험에 관한 분석을 승인체계(approval framework)에 적용시켜 프로젝트(사업)의 시작에 앞서 미리 위험 파악 가능

- OECD, IMF, IFAC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발부채 관리 관련 모범사례를 계속 보여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뉴질랜드 또는 호주 등 선진 사례를 참고로 제안함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우발부채 관련 구체적인 정보 공시 및 그와 관련한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공시에서 더 나아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을 언급함. 또한 국제기구들의 모범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함

**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국장**

»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 사례**

- 우발부채 관리와 정부재정 상태가 코로나19 이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그중 영국은 공공재정에 있어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음. 특히 WGA는 단순히 회계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공공재정 관리를 위한 정보원천으로,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함
- IPSASB도 영국의 공공부문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WGA가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바 있음
- 영국은 우발부채를 단순히 회계적인 관리 차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경제, 통계 등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유용한 정보의 생산에 활용되며, 이렇게 생산된 정보들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라 생각함



» **영국 우발부채 범위**

- 영국은 IFRS와 IAS 회계 기준을 넘어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우발부채까지 공시하고 있으며, 확대된 범위의 우발부채 정보는 공공재정관리 체계 측면에서 유용함
- 특히 희박한 우발부채를 포함하여 향후 우발부채가 더 이상 희박하지 않고 현실화되는 시점에 공시되고 있는 점 등이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음

## » 한국 우발부채 범위(IPSASB 입장)

- 재무제표에 공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공시하게 되면 재무제표 자체의 유용성이 떨어짐
- 그러므로 영국은 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의 공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실행 중인 것으로 보임
- 영국 사례와 유사하게 IPSASB는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보고 가이드라인인 RPG 1(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1)이라는 권고안이 있음. RPG 1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재정상태표를 통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보다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이때 우발부채의 현실화까지 고려함
- 이 국제심포지엄 이후에 많은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에서 우발부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함

### (좌장) 김봉환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우발부채 관리에 있어 영국이 모범사례 국가임에 동의해 주었으며, WGA(공공부문 통합결산서)를 통해 공공재정관리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함. 또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우발부채를 공시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을 넘어서는 IPSASB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이를 참고하면 좋겠다고 언급함

## [국가별 발표자의 답변 및 추가 의견]

### 최연식 경희대학교 교수

- 희박한 우발부채, 주석에 공시되는 우발부채, 그리고 충당부채는 결국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발생 가능성과 측정의 신뢰성 관점에 있어 동태적인 연계과정으로 연결된 항목임
- 이 세 가지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 같다는 점임. 이와 관련하여 세 항목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Manj Kalar, Kalar Consulting 대표

- 영국의 우발부채 승인체제는 새로운 우발부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임
- 또한 회계 관점에서만 우발부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적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적어도 위험(Risks)을 미리 인식한다면 위험완화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지금이 가장 우발부채에 관심 가져야 할 시기라 생각함

# 2022 국세행정포럼



## 가. 개요

- 주 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
- 일 시: 2022. 12. 19.(월) 15:00~18:00
-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주 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국세청
- 발 표
  - ①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②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 ③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사회자 및 패널: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고은경(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전규안(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오문성(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변영선(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하나경(세무사)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2 국세행정포럼’이 2022년 12월 19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 가지 주제의 안건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였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은 세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발제를 담당하였다. 이후 발제와 토론 내용은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2022 국세행정포럼(2022. 12. 19., 한국프레스센터 20층)

### 나. 발제 요약

- (연구배경)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가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됨
  -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현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변경된 제도로 인해 공익법인에 발생한 애로사항 등 최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 필요
-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각종 의무규정 및 제도를 파악하고 실효성을 분석하여 공익법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제도변화 성과) 공익법인 관련 최근 세법상 제도변화에 따른 성과를, 크게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공익성 및 관리강화로 구분해서 살펴봄
  -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을 통해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공시확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게 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가 강화됨
  - (공익성 및 관리강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의 확대<sup>4)</sup>를 통해 공익활동 관리가 강화되었고, 공익법인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됨
- (제도개선 검토) 공익법인 관련 의무규정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부담이 높아진 공시제도(공시서식, 공시절차, 공시지원 등)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회계감사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시가 확대되고, 자료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및 재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다수 지적됨
  -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공시제도에서 공시사항, 공시절차, 공시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출처: 박성진,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022 국세행정포럼 발표자료.

4)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수익사업용 자산가액 1%) 대상이 기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원, 수입 규모 3억원인 공익법인으로 확대되었고,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이 일원화되면서 기존 일반공익법인도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됨.

-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작성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합운영을 위해 일부 서식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병합하고, 중복 제출에 따른 공익법인의 행정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시서식 개선) 공익법인의 사업수행 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함
  - (공익법인 비용체계)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 분배비용을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으로 세분화하고, 공익법인의 각종 공익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서비스 지원비용(신설)으로 분류하여 공익목적 사업비용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함
  - (결산공시 지침)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각 공익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제하고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작성지침 마련 필요
- (공시절차 개선) 공익법인의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의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안
  - 또한 오류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재 누락 및 자료 간 불일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익법인들이 공시서류 제출 전 사전점검해 볼 수 있는 오류사례집 또는 자가점검 리스트의 배포를 제안함
- (공시지원 강화) 공익법인의 공시와 관련해서 국세청의 정기적인 교육운영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회계이론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규과정 개설 및 운영
  - 공익법인 결산서식과 관련하여 작성방식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문화예술, 장학, 사회복지 등)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검토 필요
  -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사례 강화 및 실습운영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외부 회계감사)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 (1천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과 산업협력단 등은 주무부처로부터 별도의 감사나 감리 등 관리를 받고 있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행정부담으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sup>5)</sup>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감사인 지정이 중복되는 우려가 있음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단일 기준인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기부금, 정부보조금 등 사업운영 규모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정이 필요한 공익법인을 검토하는 등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 토론 요약

### 전규안 교수(숭실대)

- 공익법인 제출서류 간소화와 관련하여 한 번의 서류 제출로 모든 제출의무가 완료되도록 개선 필요
- 재공시 관련하여 현재 주식회사의 재공시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 필요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우 수정 전·후의 공시내용이 그대로 보존되며, 수정사항에 대한 안내 및 수정 전 공시에 대해 최종 공시가 아니라는 문구 등 삽입
  - 이를 통해 재공시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음
- 공익법인 공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회계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회계전문가의 연수시간 인정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한 방안을 통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5)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또한 소상공인이 회계전문가에게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처럼 공익법인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회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 고려 필요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독립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현재 자산 기준에 수익금액을 포함한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 대상 선정 필요
-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주기적 지정대상 선정 및 제외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감사보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감사인과 공익법인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반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함
- 공익법인 홈페이지에서 국세청 결산서류 공시를 바로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와 같이 연결공시를 도입하여 내부거래 제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 고려
-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공익법인을 규제·감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 본연의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인식해야 함

####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 공익법인은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필요
-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식 개선의 문제는 규제 완화의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개선 필요
-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공익법인이 4년 자유선임을 하는 중에도 이후 지정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함

### 최원석 교수(서울시립대)

-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강화 필요
-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서 공익법인 실무자나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비영리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익법인 실무 개선 도모

###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공익법인 관리·감독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국세청 인력 증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위원회에서 감독하고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방법 고려
- 공익법인 재공시는 제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정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세청의 인력 부족으로 모든 공익법인의 검토 및 시정 요구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됨
- 중소 공익법인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수에 즉각적인 제재 이전에 재공시 횡수 제한 및 재공시 횡수 및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선의의 기부자에게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 필요
- 형평면제처분제도는 조세채권의 확정과 징수에서 과세관청이 조세감면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통해 선의의 기부자가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구제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평가한 정보를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한국가이드스타 등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한 정보를 공시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일반 기부자의 정보 이용 및 기부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변영선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삼일회계법인)**

- 주무부처, 행안부 등 공익법인의 서류 제출이 많은 상황에서 세법 내의 공시 서류 통합은 매우 필요한 사항
- 이와 더불어 기부금의 사용내역뿐 아니라 운용소득의 사용내역도 공개해야 기부금을 활용한 공익법인 지출의 완전성 체크가 가능
- 공익법인이 용역 서비스를 통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비스 비용을 분배비용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서식 마련 필요
- 공익법인 공시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공시 오류사항이 많은 상황이며,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 공익법인이 있어 재공시가 많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음
-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익법인이 공시할 수 있도록 완전성 체크 필요
-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국세청의 비영리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인력 확보 필요



#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 가. 개요

- 대주제: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성과와 혁신
- 일 시: 2022. 12. 9.(금) 13:00~17:3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최: 이달곤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 주 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 • 세션 1

#### [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

- [사 회] 배창현 교수(강릉원주대학교)
- [발표 1] 국가회계 현황과 과제(김완희, 가천대학교)
- [발표 2] 지방회계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역할 강화(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발표 3] 정부회계 정보시스템의 회고와 미래(박정수, 씨엔에프시스템)
- [토 론] 김동욱 교수(제주대학교), 김철희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엄태호 교수(연세대학교), 최우성 팀장(행정안전부)

### • 세션 2

####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

- [사 회] 박상연 교수(배재대학교)
- [발표 1]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정도진, 중앙대학교)
- [토 론] 김완수 팀장(기획재정부),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

##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 [세션 1. 정부회계의 성과와 비전]

#### 주요 발표 내용

##### [발표 1] 국가회계 현황과 과제(김완희 교수, 가천대학교)

국가회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성인지 결산서,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통합결산서의 공시량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가재정 전반의 종합적 파악과 성과 중심의 체계적 재정운용을 위해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통합 정보와 자동검증 기능에 따른 자산·부채 정보가 산출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국가재정 전반의 종합적 파악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과보고서와 회계보고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보고서의 활용도도 낮아 성과 중심의 체계적 재정운용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막연히 축적해 온 회계정보가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10년간 자료를 분석 결과,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자산의 연도별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 데이터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시적인 자산재평가가 데이터의 일관성을 손상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와 사회기반시설의 복구충당부채는 현재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 축적해 온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낮으며, 이를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회계법」 제·개정 관련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체계화 등은 개선된 부분이나, 재무보고 총평(제15조) 관련 국가재정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퇴행된 부분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역시 제·개정 내용이 거의 없어 개선사항을 찾기 어렵다.

정부회계 연구의 최근 10년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학, 공기업 및 공익법인 등 연구 대상이 다양해지고 실증연구가 증가했으나, 연구는 대부분 정책연구용역에 치우쳐져 있고 후속연구 연계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재정부담 세대(누가), 지출대상과 항목(무엇을), 지출장소(어디서), 지출목적(왜) 및 지출수단(어떻게) 등을 중심으로 재정의 회계 책임성에 대해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 정책집행자, 정책수립자별로 상이한 정보 활용 목적에 맞는 맞춤형 국가통합결산서 산출이 필요하며, 중앙, 지방 및 공공기관 등 회계실체 범위를 확대하고, 충당부채의 인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재정정보원, 국회예산정책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국내 전문기구와 IPSASB 및 OECD 등 공공회계 국제기구 간에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주요 토론 내용

### 김동욱 교수(제주대)

국가재무제표 주석의 분석을 통해 내용연수 정보의 비일관성을 확인했듯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성수대교 사고 등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감가상각을 포함하고, 자산재평가 등의 국가와 지방회계의 상반된 기준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업회계 교육에는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회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디브레인(국가)이나 e-호조(지방) 관련 데모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2022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2022. 12. 9.,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철희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회계의 경우, 조례 등에 따르면 전년도 예산의 결산이 차년도 하반기에 승인되어 최근의 결산 정보 활용이 어려우므로, 예산 활용의 적시성 증진을 위해 자치법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사업비가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보조금으로 관리되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별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 회계시스템상의 개정과목 동일화가 필요하다.

**엄태호 교수(연세대)**

현재 디브레인(국가) 데이터는 비공개이고, 지방회계 데이터도 지방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다.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 수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회계 데이터의 접근성이 증대되어야 하며, 지역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우성 팀장(행정안전부)**

회계데이터의 신뢰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나, 올 상반기에 공유재산 기준을 제정하여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므로, e-호조와 새올행정시스템상 데이터의 정합성이 증진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회계사 등의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완희 교수(가천대)**

민간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정부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으로 발생주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하다.

**신유호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별 회계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주민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겠으며,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 [세션 2.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

### 주요 발표 내용

#### [발표 1]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모색(정도진 교수, 중앙대학교)

현재 국가결산보고서가 당면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이 낮다. 결산보고서의 분량이 방대하고, 결산보고서와 재무제표의 구성 또한 복잡하다.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이해와 접근성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훼손하므로, 국민의 이해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발생주의 결산정보의 활용이 낮다. 재정상태표는 연금충당부채 추정 등에 일부 활용되나, 재정운영표 등 다른 재무제표는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한 유동·비유동의 자산 분류 등 기업회계와 국가재정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반면,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등의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민중심 결산보고서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고자하는 목적으로, 크게 세 가지 주제에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상태표의 경우 민간기업의 자산·부채 분류 체계인 유동·비유동 구분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유용성이 낮다. 따라서 금융자산(정부출자금 등), 유·무형자산(사회기반시설 등), 차입부채(국채 등), 충당부채(연금충당부채 등) 및 사회보험부채와 같이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보다 유용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주석을 적극 활용하여 자산·부채 계정과목을 대폭 축소하여 가독성을 제고하고, 중요한 충당부채 등을 구분·표시하여 중요한 미래 지출액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순원가를 분야별 순원가 공시체계로 전환하여 15대 예산분야와 직접 연계된 분야별 순원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과 비용(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성하여 주 재무제표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운영표의 이해 가능성과 접근 가능성을 높여 유용성과 활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재무제표의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국가재정의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로 국가재정 현금흐름의 집행과 조달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표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주석의 작성범위를 확대하여 재무제표를 간소화하고, 세부 정보를 주석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와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결산개요에 포함하여 회계보고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의 중장기 과제는 연계성, 적시성, 독립성 및 전문성의 강화이다. 예산 및 재정예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발생주의 결산체계는 적시성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예산에 따른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2007년 설치된 국가회계제도심의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독립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성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토론 내용

### 김완수 팀장(기획재정부)

국가회계 재무제표는 국가 자산·부채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반이며, 체계적으로 국가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잠재부채의 개념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재정운영 관리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국가결산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간소화된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결산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 결산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 김이배 교수(덕성여대)

국가결산체계와 관련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산보고서 전체의 관점에서 국민 중심으로 개편할 것인지 혹은 재무제표 결산의 개편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현금흐름표와 비교하여 보다 단순화된 대안적인 현금흐름표가 필요하다.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중심의 국가결산체계 개편 방안이란, 생산한 회계정보를 어떻게 수요자 중심의 재무보고체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인다. 지금까지 구축 자체에 초점을 맞춰온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을 향한 투명한 소통의 통로로 탈바꿈하는 원형이 될 것이다. 국가결산체계 개편 방안이 실제로 법제화되고 디브레인 시스템에 반영되어 모든 정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국가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연식 교수(경희대)**

결산 보고의 방향이 국민중심이라면, 결국 발생주의 국가 결산정보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지게 되는 재정책임 보고의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내 정책 당국자들 및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부회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학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회계기준 제정의 실체와 회계보고의 실체는 같다고 보인다. 이것이 과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기반이 형성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 제정기관과 회계제도 운영 주체를 분리하여 독립성 확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2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2022. 12. 9.,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가회계  
재지통계



## 공지사항



###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mailto:gafsc@kipf.re.kr)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